

조선왕조 장기지속의 경제적 기원*

김 재 호**

논문초록

이 연구는 조선왕조(1392-1910)의 장기지속의 조건을 경제학적 기반에서 새롭게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국왕과 신하, 또는 중앙과 지방간의 세력균형에 주목하였을 뿐 경제체제에 관한 이해가 피상적이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치체제를 분석할 수 있는 경제학 연구로부터 이론적 자원을 획득하고자 하였다. 특히 국가의 구성원, 즉 엘리트와 대중으로 하여금 국가에 협력(충성과 복종) 하게 만드는 경제적 유인에 주목하였다. 또한 초보적이지만 조선왕조와 동 시기 明清代 중국과의 비교를 통해서 조선왕조의 특징을 좀더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조선왕조는 지배연합을 형성한 엘리트에게 렌트를 보장함으로써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과거제를 통해 엘리트 충원방식을 제도화하고 경쟁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배연합의 구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조정할 수 있었다. 렌트의 주된 원천은 조선왕조 경제체제의 재분배적 성격을 반영하여 국가재정과 이에 종속된 상업에 있었으며, 지방재정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형성된 '선물경제'는 지배연합을 유지, 강화하는 효과를 발휘하였다. 상공업자를 배제하고 지배연합의 동질성과 농촌적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조선왕조의 장기지속에 기여하였다. 이로 인해 엘리트의 부 구성이 토지에 집중된 것은 정치제도의 변화에 대해 보수적으로 행동하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대중의 집단행동을 억압하기 위해서 강력한 법률이 시행되었지만, 대중은 현물재정의 운영에 일정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환곡을 비롯한 공공재 공급을 통해서 대중의 '준 자발적 복종'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이 조선왕조의 장기지속을 위하여 중요하였다. 환곡제도는 많은 운영상의 폐단을 낳았지만, 같은 유형에 속하는 명청대 중국과도 대비되는 조선왕조의 두드러진 특징이었으며, 생존 상의 위기가 정치적 위기로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였다는 점에서 조선왕조의 장기지속에 기여하였다. 조선왕조의 장기지속에는 지배연합에 대한 렌트 분배와 대중에 대한 공공재 공급 간의 균형이 핵심적 조건이었다.

핵심 주제어: 조선왕조, 자연국가, 지배연합, 장기지속, 재분배, 렌트, 공공재, 환곡, 준자발적 복종, 집단행동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N01, N45

투고 일자: 2011. 4. 19. 심사 및 수정 일자: 2011. 7. 29. 게재 확정 일자: 2011. 10. 17.

* 이 연구는 LG연암재단의 2008년도 해외연구교수 지원을 받았다. 동 재단과 Harvard 대학교 동아시아학부의 김선주(Kim, Sun Joo) 교수에게 감사드린다. 이 논문의 초고는 2011년 2월 '201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와 동년 4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경제사 세미나에서 발표된 바 있다. 특별히 박이택 박사, 이철희 교수 및 익명의 심사자 세 분에게 감사드린다.

**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 e-mail: jhokim@jnu.ac.kr

I. 머리말

조선왕조(1392-1910)가 장기간 존속할 수 있던 것은 외국에게 정복되지 않고, 엘리트 내부의 경쟁자에 의해서 왕조를 탈취 당하지 않았으며, 대중의 반란에 의해서 전복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동어반복에 불과한 것이다. 왜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이 성립 가능하였는가를 탐구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오래된 주제인 조선왕조의 장기지속(longevity)의 조건을 경제학적 기반에서 새롭게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단 '외국에 의한 정복'과 관련된 대외관계의 문제는 추후의 과제로 남겨두고 이 연구에서는 조선왕조 내부의 문제에 집중하고자 한다.

일찍이 전해중(1976)은 한국과 중국의 왕조교체를 비교하여 한국의 왕조가 월등히 장기간 존속하였음에 주목하였다. 한국의 경우 한 왕조가 대체로 500년에서 700년에 이르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가장 오래 존속한 唐, 明, 淸도 300년에 미달하였으며 70에 가까운 중국의 왕조 중에 200년을 넘는 것은 5개 왕조뿐이었다. 이와 같이 한국의 왕조가 장기지속하게 된 요인은 “고도의 중앙화”에 있었으며, 이는 “영역의 협소, 정치지향성, 봉건제의 결핍”으로 인해 지방 세력의 성장이 미약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기타 부차적인 요인으로서 한국이 천재지변의 규모가 작았고 반란의 모태가 될 상업적, 종교적 結社도 희소하였으며, 이민족과의 관계도 단순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조선왕조는 문민통치하에 군사력이 약화되어 반란을 일으키기 어려웠으며 조공제도에 의해서 중국이 통치자의 지위를 보장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12-20).

Palais(1975, 272)는 이러한 조선왕조의 “예외적 안정성”(extraordinary stability)은 중앙집권적 군주와 귀족적 엘리트 간의 힘의 균형의 산물이며, 국왕이나 귀족 어느 한편의 권력 강화는 궁극적으로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저지되었다고 주장하였다. Cumings(1997, 73)도 “중앙권력과 토지재산 사이의 긴장”(the tension between central power and landed wealth)으로 인해 장기간의 안정을 누릴 수 있었다고 보았다. 앞의 전해중(1976)이 중앙이 지방을 압도한 것에서 장기지속의 요인을 찾았다면, 군주와 엘리트, 중앙과 지방의 세력 균형에 주목하였다고 할 수 있다. 과연 중앙이 지방을 압도하였는가, 균형을 이루고 있었던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지만, 조선왕조의 중앙집권적 정치체제와 군주제의 기본적 특성으로부터

장기지속의 요인을 찾고 있다는 점에서 부인할 수 없는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¹⁾ 그러나 세력 균형을 판단할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함께 중앙과 지방, 국왕과 엘리트 간의 갈등이 전면에서 부각되어 강조됨으로써 엘리트(양반)가 조선왕조를 지지하는 이유를 알 수 없게 되었다. 나아가 엘리트를 제외한 대중이 조선왕조의 존속과 무관한 것처럼 도외시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²⁾

한편 Palais(1999, 91-97)는 좀 더 구체적으로 조선왕조의 “장기지속성(longevity)과 안정성(stability)”의 근본 요인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³⁾ 첫째 요인은 조선왕조가 조공체제 하에서 자신의 열등한 지위를 인정하는 동시에 주변국들도 간접지배를 선호하였다는 점이며(“외세에의 순응”), 둘째 요인은 정변이나 반란이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왕족을 국왕으로 옹립해야만 하였다는 점이며(“실세의 외관으로서의 왕의 정통성”), 그리고 셋째 요인은 오랜 기간 사회를 지배해온 엘리트들이 왕을 지지하였기 때문에(“전통적 정통성”) 조선왕조가 장기간 존속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왕조의 장기성을 가능하게 한 것은 신분계층 간의 조화이기보다는 그것을 성취한 사람들의 신분 계층적 특권의 보존이었다.”(117). 같은 관점에서 송준호(1987, 162)는 “깊은 뿌리와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양반이 있었기에 조선왕조는 500년이란, 인류역사상 그 유례가 결코 많지 않은, 장수를 비교적 평화한 속에서 누릴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엘리트의 특권의 보존이 왕조의 장기지속을 가능하게 한 주요인이었다는 입론은 강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엘리트의 특권과 그것이 기반하고 있었던 경제체제에 대한 이해가 피상적이라는 점이다. Palais(1975, 1999)에 있어서 조선왕조의 농업관료제(agrarian bureaucracy)는, 토지에 기반을 둔 양반 엘리트들의 저항

-
- 1) 이러한 국왕과 신하 간의 세력균형 또는 경쟁이라는 관점은 보다 근원적으로는 중국을, 농민의 잉여 생산물을 두고 국가와 지주가 경쟁하는 유형의 제국으로 이해하였던 Eisenstadt(1963)의 비교 정치체제론, 전근대 관료제론에 기초하고 있다. 경쟁만이 아니라 협력에 대해서도 동일한 비중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 2) 이러한 점에서는 Palais(1975)가 농민을 조선왕조 장기지속의 설명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박종성(1995)의 비판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농민의 저항과 이에 대한 양반 지배층의 ‘예방적 대응’으로 장기지속을 설명하려는 시도도 그다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국가에 대한 협력과 복종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경제체제에서의 국가의 역할에 대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세력 균형에 의한 추상적 설명에 그치고 있다고 생각된다.
 - 3) Palais(1999)는 참고문헌의 팔레(1999)를 가리킨다. 동일인이므로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이하 영문으로 표기한다.

으로 인해 허약해진 국가재정, 심화되어가는 관료의 부패라는 이미지에 압도되어 있기 때문에 조선왕조의 경제체제에 있어서 국가의 위치와 기능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Palais(1996)는 조선왕조의 ‘유교적 治國策과 제도’에 관한 1300면에 가까운 방대한 저서에서 조선왕조는, 모든 사회를 유교적으로 재편하려고 하였던 유학자들의 도덕적 ‘이상’과 그것을 좌절시키는 ‘현실’ 사이의 끊임없는 갈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 바, 조선왕조는 초기의 도덕적 열정을 상실함에 따라 15세기 말엽부터 ‘관료제적 쇠퇴’의 특징을 드러내기 시작하였으며(1007), 16세기말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실정과 당쟁, 불공정한 과세, 부의 집중, 책임회피, 국방력의 쇠퇴”로 인해 멸망했어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1003-1004). 그에 의하면 “[조선왕조의] 중앙관료제는 변화하는 상황에 대해 반동적인 방식으로 대응했다. 즉 정부는 어떤 실질적인 새로운 체제로의 적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기보다는 변화하는 현실에 대해 최소한의 조정만을 시도했다.”(Palais, 1999, 113). 조선왕조가 장기지속한 것이 과연 이처럼 500년이 넘는 생애의 5분의 3을 경화되어 기능부전인 상태로 연명한 것에 불과한 것인가? 또한 한 왕조의 흥망성쇠를 ‘도덕’에 기초하여 설명하는 것은 타당한 것인가? 오히려 조선왕조 경제체제에 대한 통합적 이해의 부족과 지나친 서구 중심적 사고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근래 한국경제사 학계에서는 국가를 중심으로 조선왕조의 경제체제를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졌다.⁴⁾ 이에 따르면, 조선왕조의 경제체제는 국가재정이 경제통합에 지배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의미에서 ‘국가적 재분배경제’의 특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 여기에는 국가에서 필요한 재화를 지방으로부터 현물로 수취하여 사용하는 재정제도(공납제)와, 국가가 일정량의 곡물을 비축하여 매년 방출하고 환수하는 곡물저장(환곡) 제도가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이 연구와 관련하여 공납제도는 국가재정에 생산 충격으로 인한 물가 변동에 대한 적응력을 부여하였으며, 환곡제도는 기근 등의 위기 시에 농민의 생존에 도움을 주었음이 틀림없다.

4) 1990년대 중반 이후 자본주의 맹아론과 조선시대 봉건제론을 비판하는 가운데 Polanyi(1944, 1977)의 ‘재분배’(redistribution) 개념을 원용하여 적지 않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이현창, 1996, 1999; 이영훈, 1996, 2000; 김재호, 2005, 2007, 2008). 이러한 경향의 연구는 최근 이현창 편(2010)으로 종합되었다. Polanyi(1944, 1977)의 정의에 따르면, ‘재분배’는 한 사회를 통합시키는 재화의 이동(현물 또는 재산권)이 중앙으로 집중되어 다시 주변으로 배분되는 유형의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이다.

1980년대 이후 한국경제사 연구는 ‘자본주의 맹아론’ 또는 ‘내재적 발전론’에 대한 비판을 축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는데, ‘맹아론’에 대한 주된 비판은 전체 경제체제에 대한 고려 없이 단편적인 발전적 양상을 ‘부조적(浮彫的)’으로 파악하려 하였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서 한국경제사 연구는 조선왕조 경제체제에 대한 구조적이고 입체적인 이해를 지향하는 한편, 경제 전체의 성과와 변화를 보여주는 장기 시계열의 정비에 집중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맹아론’이 가정하고 있었던 단선적인 역사관이 비판되는 한편, 조선왕조의 경제체제에 대한 앞에서 언급한 ‘국가적 재분배경제’ 논의에서 보듯이 구조적이고 입체적인 설명이 시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항 이후의 충격과 대응에 대해서도 좀 더 합리적이고 실증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성과를 통합할 수 있는 분석틀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근본적인 문제로 남아있다. 우선 방법론적으로 한편에서는 Polanyi(1944, 1977)의 경제통합 유형론에 입각하여 조선후기의 경제체제를 시장경제가 부차적인 의미를 갖는 ‘국가적 재분배경제’의 유형으로 이해하고 있지만(대표적으로는 이영훈·박이택, 2007; 이현창, 2010; 김재호, 2005), 다른 한편에서는 물가를 비롯한 수량 데이터를 집적하고 해석하는 가운데 암묵적으로 가격에 대해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합리적인 경제인과 시장경제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대표적으로는 이영훈 편, 2004; 특히 차명수, 2009a).

이러한 가운데 최근 Jun, Lewis, and Kang (2008)은 17세기 이후 조선후기 경제를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틀로서 “아담 스미드의 중농주의적 관점”(Adam Smith’s physiocratic view)을 제안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근래 중국사 연구에서 주장되고 있는 ‘스미드적 성장’(Smithian growth) 모델을 받아들인 것으로서, 분업과 전문화에 의한 생산성의 증대와 시장의 확대에 의한 경제성장의 관점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 의하면 조선왕조는 17세기 이후 토지에 대한 재산권이 보장됨으로써 ‘스미드적 성장’이 진행되었는데, 이 성장을 촉진 또는 저지하는 요인은 국가에 의한 인프라스트럭처 공급, 곡물저장, 조세감면, 생태적 상황이었다. 이들 요인들로부터 17세기 이후의 장기 물가변동을 설명하고자 하였는데 물가추세에 대한 실증도 재검토해야겠지만,⁵⁾ 근본적인 문제는 ‘스미드적 성장’을 촉진하고 저지하는 요인들

5) 이에 대한 비판은 Cha(2009).

이 완전히 외생적이라는 점에서 조선왕조의 경제체제에 있어서 그러한 요인들이 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이유를 설명할 방법이 ‘스미드적 성장’ 모델의 틀 내에서는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중국 경제사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Wong(1997)과 Pomeranz(2000)는 중국(강남)과 유럽(영국)이 18세기까지 ‘스미드적 성장’을 하였으며 ‘大分岐’(Great Divergence)는 19세기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외생적인 우연적 요인에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Wong(1997)은 정치제도(국가형성과 집단행동) 상의 차이가 경로의 차이를 초래하였을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정치제도가 경제적 변화에 대해서 우연적인 요인에 불과하여 경제적 변화와의 통합적인 설명이 결여되어 있다. Pomeranz(2000)는 아예 정치적, 제도적 요인에 의한 설명을 배제하고(영국과 중국이 동일하다고 이해), 석탄부존, 식민지 획득과 같은 지리환경적인 우연성으로 발전경로상의 차이를 설명하였다.⁶⁾

이러한 경제사 연구의 현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치제도를 경제적 성과 및 변화와 통합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분석틀이 필요하다. Polanyi의 경제통합 유형론은 국가(또는 재정적 몰류)의 중요성과 지배력을 강조하였으나 미시적 기초가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통합 유형의 형성과 변화를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한다면, 스미드적 성장이론은 정치제도를 포함한 제도적 요인을 배제하거나 외생적이며 우연적인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조선왕조의 장기지속을 가능하게 하였던 조건들의 ‘경제적 기원’(economic origins)을 고찰하는 방법을 택하였다.⁷⁾ 정치제도의 지속이 경제적인 요인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느냐는 질문이 경제적 성과와 정치제도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질문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

6) 중국경제사 연구의 현황에 대해서는 리보중, 이화승 역(2006)과 강진아(2004, 2008)에 상세하다.

7) 이 연구의 제목을 ‘경제적 기원’이라고 한 것은 이 연구가 크게 의존하고 있는 Acemoglu and Robinson(2006)의 제목에서 인용한 것이다. 이들은 민주화를 결정짓는 8가지 요소가 모두 근본적으로 경제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보았는데, “본질적으로, 상이한 정치적 결과는 그 사회가 근본적으로 기반하고 있는 경제구조상의 차이로부터 생겨난다. 바로 이점이 이 책이 [독재와 민주주의의 경제적 기원이라는] 제목을 단 이유이다.”(43)라고 밝히고 있다. 제목을 인용한 것은 이러한 입장에 동의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Acemoglu and Robinson(2006)은 Moore(1966)의 고전 *The Social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를 의식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 조선왕조라는 정치체제의 장기적인 존속을 가능하게 하였던 조건들의 경제적 기원을 설명할 수 있다면, 조선왕조의 정치체제와 경제체제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석틀도 전망해볼 수 있을 것이다.

조선왕조의 구체적인 현실을 직접 분석하기에 앞서 제Ⅱ장에서 조선왕조와 같은 비민주적 국가(정치체제)가 장기간 지속할 수 있는 조건을 분석할 수 있는 경제학 이론과 개념을 탐색하였다. 특히 North, Wallis, and Weingast(2009)의 ‘자연국가’(natural state), Levi(1988)의 ‘준 자발적 복종’(quasi-voluntary compliance), Olson(1965)의 ‘집단행동’(collective action), 그리고 Acemoglu and Robinson(2006)의 ‘독재와 민주주의의 경제적 기원’에 관한 연구를 검토함으로써 이 연구에 응용될 수 있는 요소를 찾아내고 이를 종합함으로써 비민주적 국가가 장기지속하기 위한 조건을 가설적으로 제시해보았다. 논의의 전제가 되는 것은 비민주적 국가라고 하더라도 폭력 또는 강제에 의해서만 장기간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엘리트의 협력과 대중의 복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인체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제Ⅲ장과 제Ⅳ장에서는 조선왕조에 관련된 제 연구를 종합하는 방법을 취하였는데, 조선왕조의 구성원을 엘리트(제Ⅲ장)와 대중(제Ⅳ장)으로 나누어 각각 조선왕조를 지지하게 되는 경제적 유인에 대해서, 그리고 국가에 대한 집단행동의 문제에 대해서 검토한다.

한 국가의 흥망성쇠는 어느 단일한 요인으로 환원될 수 없으며, 실로 무수한 요인들이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요인을 고려하여 국가의 흥망성쇠에 대한 이론을 고안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며(Olson, 1982), 이 연구는 사회구성원과 국가 간의 이해관계라는 경제적 요인에 집중하여 조선왕조의 장기지속을 설명하고자 시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가 조선왕조가 장기간 지속할 수 있었던 모든 요인에 대한 해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⁸⁾

8) 이 연구는 서두에서 밝히고 있듯이 조선왕조가 장기지속하게 된 조건을 경제학적 기반에서 이해,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이며, 이러한 방법에 대해 과연 전근대 사회에 대한 경제학의 이론적 도구에 의한 분석이 가능한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경제학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학의 적용 범위를 확장시키는 의의를 가지고 있지만, 농촌사회에 대한 ‘합리적’ 설명과 ‘도덕경제’적 설명 간의 오랜 논쟁에서 보듯이 어느 한편이 일방적으로 옳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Scott, 1976; Popkin, 1979). 연구방법에 대한 평가는 궁극적으로는 설명 능력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경제적 성과가 국가(정치체제)의 흥망성쇠와 관련이 있다면

또한 이 연구의 목적이 조선왕조라는 비민주적 정치체제의 장기지속을 경제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설명하는 것이지만, 같은 유형에 속하는 동시기 明清代 중국과의 비교는 조선왕조의 특징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왕조에 대한 분석이 종료된 이후에 제V장에서 조선왕조와 동시기 중국을 간략히 비교함으로써 조선왕조의 특징을 좀 더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이는 이 연구의 분석에 사례를 추가하여 보강한다는 의미도 있을 것이다. 중국의 명청대와 비교를 행한 것은 앞에서 보았듯이 최근의 명청대 경제사 연구가 기존 경제사 연구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그 여파로 한국경제사 연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였다는 점, 그리고 동시기 중국과 조선과의 비교사 연구가 상대적으로 풍부하다는 점 때문이다. 한국의 역대 왕조와의 비교는 사실상 한국사에 관한 통사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방대한 준비가 없이는 착수하기 어려우며 이 연구의 방법이 어떤 가치가 있다면 추후 한국의 역대왕조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VI장에서는 이 연구의 성과를 요약하고 한계점을 밝힘으로써 이 글을 끝맺고자 한다.

경제적 성과를 규정하는 인구, 지식, 제도, 이익집단, 그리고 인지기조와 신념체계와 같은 실로 다면적인 요인들이 국가(정치체제)의 흥망성쇠를 규정할 것이다(Olson, 1982; North, 1981, 1990, 2005).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과 의의는 한정된 것이다. 특히 North (2005)가 주목하고 있는 신념체계와 지식은 “非반복적인”(non-ergodic) 인간적 환경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대응(선택)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성과, 나아가 정치체제의 존속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음이 분명하지만 독립적인 요인으로서 분석하지 못하였다. 연구의 범위를 크게 벗어날 뿐만 아니라 정치체제의 변동과 신념체계 간의 인과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참고로 이현창(2004a)에 따르면, 조선왕조의 유교는 조선왕조 지배층의 “제한된 합리적 선택”이었으며 조선왕조의 현실에 조응한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조선왕조의 장기지속에 크게 기여하였다. “조선왕조가 5백년 이상 존속하고 그것도 외부 충격에 의해 몰락할 만큼 고도의 안정성을 누린 데에는 유교가 큰 역할을 하였다.” 무엇보다 “유교만큼 군주에 대한 자발적 충성심을 효과적으로 조장하는 이념”을 찾기 어려우며, “유교문화를 통해 군주에 대한 충성을 유도하려는 조선 지배층의 의도는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이다(180-181). 현재로서는 엘리트(양반)로 구성된 지배연합의 안정성, 대민정책에서 왕도정치와 관련된 治者의 책임의식과 공공재 공급, 士農工商의 위계적 직업 분화와 중농주의적 경제질서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유교의 확산은 지배층의 지배이데올로기에 대중을 동조하도록 함으로써 대중의 집단행동을 저지하는 역할을 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추론하는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다.

II. 이론적 자원

국가의 발생 이후 인류역사에 존재하는 정치체제는 구성원의 정치참여를 기준으로 ‘민주주의’와 ‘비민주주의’로 양분할 수 있다. Acemoglu and Robinson(2006)과 같이 ‘독재’와 ‘민주주의’로 유형을 나눌 수 있으며, 권력 획득과 승계 과정상의 차이를 기준으로 ‘비민주주의’를 ‘군주제’(monarchy)와 ‘독재’로 세분할 수도 있다(Tullock, 2005).⁹⁾ 조선왕조는 말할 것도 없이 ‘비민주주의’이며 ‘군주제’에 속하는데, 이러한 국가에 대한 모델로는 ‘약탈국가’(predatory state)가 출발점이 된다.¹⁰⁾

단순한 약탈국가 모델에 의하면, 국가는 ‘불박이 강도’(stationary bandit)로서 ‘뜨내기 강도’(roving bandit)와 달리 장기적으로 수입을 극대화하려는 존재이다(Tullock, 2005). 국가가 장기적 전망을 갖게 되면 주민들의 재산권과 경제활동을 보호하려는 유인을 갖게 될 것이며 이는 주민들의 반발을 억제하고 협력을 유도함으로써 국가의 장기적 존속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Levi(1988)는 좀더 현실에 근접한 약탈국가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 통치자(ruler)는 ① 납세자 주민에 대한 상대적 교섭력(relative bargaining power), ② 징세와 관련된 거래비용,

9) Tullock(2005)에 의하면 군주제는 권력이 세습되는 것이며, 독재는 독재자가 자신의 능력으로 권력을 획득하는 것이다. 독재는 권력승계가 불안정한 체제이기 때문에 군주제로 수렴하게 된다고 예측하고 있으며 실례의 하나로 북한을 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자 모두 다수대중이 지배자의 권력 획득과정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양자 모두 ‘비민주주의’로 지칭한다.

10) North(1981, 21)는 국가를 “폭력에 대한 비교우위”를 가짐으로써 일정한 지리적 경계 내에 거주하는 구성원에게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다. Barzel(2002, 4)에 의하면 “국가는 ① [계약의] 집행(enforcement)을 위하여 폭력을 사용하는 단일한 궁극적 제3자에 복종하는 개인들의 집합, ② 이들 개인들이 거주하는, 집행자의 권력이 미치는 영토로 구성된다.” North(1981, 21-22)에 의하면, 국가에 관한 이론은 계약이론(contract theory)과 약탈이론(predatory theory)으로 대별된다. 전자는 사회 구성원이 사회의 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개인의 행동을 제한함으로써 계약의 집행을 강제하는 제3자로 보는 입장이며, 후자는 국가를 어느 특정 집단이나 계급의 대리인(agency)으로서 이를 통해서 다른 구성원의 수입을 약탈하는 존재로 보는 입장이다. 계약 이론은 국가가 특정 집단이나 계급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면, 약탈 이론은 제3자로서의 국가의 역할로 인한 사회의 이익을 놓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North는 이 두 이론은 반드시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국가 구성원이 보유한 폭력의 분포(distribution of violence potential)의 차이(계약이론은 폭력의 평등한 분포를, 약탈이론은 불평등한 분포를 가정)를 통해서 화해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③ 의사결정자의 시간전망(time horizon)인 할인율의 제약 하에서 수입을 극대화하는 존재이다.

통치자가 주민(납세자)에 대해 갖는 교섭력은, 통치자가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특히 통치자가 자신의 영지를 가지고 있거나 독자적인 수입원을 가지고 있을수록 강력해진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의 형성 과정에 있어서 국가(통치자)와 주민 간의 교섭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가설에 대한 검증을 시도한 Blanton and Fargher(2008)에 의하면, 공공재, 관료화, 주인통제(principal control)의 정도에 있어서, 수입 원천이 일반 납세자(ordinary taxpayer)의 생산물·노동력·상업거래와 같은 ‘내부’에 있는 경우가 수입 원천이 ‘기타’에 의존하는 경우보다 높아짐을 보여주고 있다.¹¹⁾ 국가의 수입 원천이 ‘내부’에 크게 의존하게 되면 주민에 대한 교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통치자에 대한 (납세자의) 통제가 강해지고, 공공재의 공급이 늘어나는 한편, 조세 징수와 공공재의 공급을 위해서 관료제가 발달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다.

통치자와 납세자 간의 교섭력에 기초하여 조세에 관한 규칙(“재정헌법”(fiscal constitution))이 정해지면(Levi, 1988, 49), 양자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납세자의 ‘무임승차’ 행위로 인해서 계약이행(복종)이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Olson(1965, 1982)은 ‘무임승차’에 의한 ‘집단행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제력이나 처벌과 같은 ‘선택적 유인’에 주목하였지만, Levi(1988, 49-70)가 논하고 있듯이 그것만으로는 감시비용(monitoring cost; enforcement cost)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수단으로서 첫째로 ‘공평’, ‘정의’ 등에 관한 이데올로기를 교육하여 내면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거나(Levi, 1988, 49-52), 둘째로 통치자가 납세자 대중에게 반대급부를 제공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함으로써 ‘준 자발적 복종’(quasi-voluntary compliance)을 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49-70). 이러한 복종은 통치자가 계약(bargain)을 지킬 것이며, 다른 구성원들도 계약을 지킬 것이라고 납세자가 확신할 때 이루어지는 전략적 행동이다. 통치자가 이러한 행동을 조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신뢰하도록 만들어야 하며 납세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만 한다. 납세자의 선택이라는 점에서는 “자발적”이지만, 불복종이 적발될 경우 처벌된다는 의미에서

11) 동아시아에서 조선왕조는 빠져 있지만, 국가 수입이 “내부”로 분류된 중국의 경우가 국가 수입이 “내부가 아닌” 일본에 비해서 공공재·관료화·주인 통제의 정도가 높은 수준이다.

“준 자발적”이며, 어떤 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데올로기적 복종과 구별된다. 납세자가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기초하여 계산된 결정을 한다는 점에서 순수하게 자기이익에만 기초한 행동과도 구별된다.¹²⁾

이상에서 지배자에 대한 복종에는 집단행동의 문제(무임승차)를 해결하기 위하여 강제력(선택적 유인)과 강제력의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통치의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는 사회적 규범, 그리고 복종에 대한 반대급부(준 자발적 복종)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Olson(1965, 1982), Levi(1988), North(1981)는 모두 국가(통치자 1인)와 납세자(주민)를 상정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국가를 지배하는 다수 엘리트를 적절히 다룰 수 없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최근 North, Wallis, and Weingast(이하에서는 NWW, 2009)는 국가를 통치자 1인으로 단순화시키는 단일 행위자 모델로는 국가가 어떻게 ‘폭력’을 독점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없음을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서 국가를 ‘조직’으로 파악할 것을 제안하였다. 폭력을 보유한 엘리트들이 각종 유형, 무형의 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발생하는 렌트(rent)를 자신들이 독점하는 대가로서 폭력의 행사를 포기하고 서로 협력함으로써, 곧 ‘지배연합’(dominant coalition)을 형성함으로써, 국가가 성립되었다는 것이다. 폭력의 억제에는 모든 사회가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접근제한질서’(limited access order), ‘자연국가’의 성립은 인류사에 있어서 엄청난 도약이었다. 집단을 형성하면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지만, 구성원 간의 폭력을 억제하지 않으면 이익은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연국가’의 성립에 의해서 폭력이 억제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은 엘리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며, 생명과 재산에 대한 침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대중에게도 귀속될 것이다. 이러한 반면에 ‘자연국가’에서는 자원에 대한 접근이 엘리트에게만 제한되어 있고 자유롭게 조직이 형성될 수 없기 때문에 폭력의 억제(질서의 유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충분히 향유할 수 없다. 특히 자원에 대한 접근제한은 폭력을 억제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기 때

12) 참고로 North(2005, 107)는 만장일치를 이룰 수 없는 사회에서 강제는 필수적이지만, 강제는 사회의 공식적·비공식적 제도에 의해서 제약되는 측면을 강조하였다. 권위주의 정치체제에서도 사회구성원이 지배자에게 복종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며 국가는 통상 강제와 사회적 규범의 혼합에 의해서 지배하게 되는데, 강제의 정도는 사회적 규범에 체화된 신념체계가 지배자의 이익과 합치하는 정도에 따르게 된다고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신념체계의 문제는 다루고 있지 못하다.

문에 대중에게 자원에 대한 접근을 개방하는 것은 본원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근원적인 한계를 갖고 있지만, ‘자연국가’는 ‘연약한’(fragile), ‘기본적’(basic), ‘성숙한’(mature)의 3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데, 통치자 1인에 의한 인격적인 지배로부터 (완전한 의미의 ‘법에 의한 지배’는 ‘접근개방’(open access) 사회에서 가능하지만) 비인격적인 ‘법에 의한 지배’를 향해 가는 발전의 정도가 단계 구분의 기준이다. NWW(2009)의 주된 관심사는 ‘접근제한’(자연국가) 사회에서 ‘접근개방’ 사회로의 이행에 있는데, 국가가 통치자의 인격적 속성에 관계없는 영속성을 획득하게 되는 것, 그리고 대중의 접근은 제한되어 있지만, 엘리트 간의 관계가 비인격적인 관계로 변화하고 엘리트에 대한 법에 의한 지배가 광범하게 진행되는 것이 ‘접근개방’ 사회로의 이행의 결정적인 전제조건이다. ‘접근개방’ 사회에서는 ‘접근제한’ 사회와 대조적으로 비인격적인 법이 평등하게 적용되고 자원에 대한 접근이 구성원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특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조직의 결성이 자유롭기 때문에 분업과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시장의 확대가 진행된다. 이에 따라서 ‘접근개방’ 사회에서는 빠르고 안정된 경제성장과 높은 생활수준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와 대조적으로 ‘접근제한’ 사회(자연국가)는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자원에 대한 접근이 엘리트에 국한되어 있고 조직의 형성이 저지되어 시장의 발전이 지체되기 때문에 경제성장의 속도가 매우 느리고 불안정하여 낮은 생활수준에 머물게 된다.

우리의 관심사인 ‘자연국가’의 안정성은 그 정의로부터 지배연합의 안정적인 유지가 관건이며, 이를 위해서 엘리트에 대한 렌트의 보장과 적절한 분배, 그리고 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배연합의 적절한 조정이 필수적이다.

자연국가는 사회질서로서 안정적(stable)이기는 하지만 그 구성이 정태적인(static) 것은 아니다. 지배연합은 항상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연합의 정체성(identity)이나 내부 편제는 세계가 변화함에 따라 항상 변화한다. 상대가격, 인구, 경제성장, 기술, 그리고 다른 많은 변수들이, 다양한 엘리트의 권력과 지위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들 변화는 [지배]연합의 구성원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고 불이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상대적 교섭위치는 변화한다. 새로운 세력 균형을 반영하기 위해서 특권과 렌트 분배의 조정이 이루어진다. 특권은 종종 권력을 가진 엘리트의 사회적 정체성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배]연합 내에서의 미세한 한계적 조정이 곤란할 수 있다. 그러나 미세

조정이 실패하면, 자신의 힘이 자신의 몫보다 크다고 믿는 구성원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신이 받아야 할 몫을 받지 못하면, 그들은 더 많은 특권을 위해 싸우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자연국가에서 지배연합의 실제적 구조는 내재적으로 불안정하다. 지배연합은, 약한 구성원을 도태시키고 새로운 강력한 구성원을 끌어들이어 연합의 전체 구성을 재편성함으로써 규칙적으로(regularly) 크기와 구성을 변화시킨다(NWW, 2009, 40).

이와 동시에 ‘자연국가’는 ‘성숙한’ 단계를 향해 발전함에 따라서 충격에 대한 복원력이 강해진다. 자연국가가 발전할수록 권력은 “내구적인” 협정에 기초하게 되고 이러한 권력에 의해서 지지되는 제도와 조직은 더욱 복잡해지고 정교해지며, 정부(국가조직)도 더욱 정교해지고 제도화됨으로써 충격에 대해서 강한 복원력을 갖게 된다(NWW, 2009, 73-74).¹³⁾ ‘자연국가’가 통치자의 인격적인 지배에서 법에 의한 제도화를 향해서 발전하게 되고 지배연합을 규율하는 규칙이 제도화되어 내구성을 지니게 된다면 ‘자연국가’의 안정성은 강화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NWW(2009)의 ‘자연국가’ 모델은 무엇보다 국가를 조직으로 파악함으로써 엘리트의 협력과 경쟁의 문제를 명시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일 행위자 약탈이론보다 우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대중에 대해서는 자원에 대한 접근으로부터 배제되고 있다는 점만 암시되고 있을 뿐이며, 주된 관심이 ‘접근 제한’ 사회의 엘리트의 지배연합 내에서 어떻게 ‘접근개방’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전제조건이 성숙하는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앞에서 살펴보았던 Levi(1988)가 주목하고 있는 조세 부과 및 납부 과정을 둘러싼 거래비용의 문제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다. 또한 엘리트의 렌트를 보장하는 ‘자연국가’의 역할과 조세수취 간에 충돌이 생

13) “기술(technology)이 국가를 연약한 자연국가에서 기본적 자연국가로, 나아가 성숙한 자연국가로 진보하도록 밀어가지는 않는다. 자연국가의 동학은 지배연합의 동학이며, 지배연합은 변화하는 조건들에 대응하여 빈번하게 재협상되고 변화한다(shift). 이러한 [지배연합의] 조정이 인격적 정체성에 기초한 권력과 렌트를 더 커지게 만든다면, 제도는 더 단순해지고 조직은 덜 복잡하게 되어 그리하여 사회는 자연국가 진보의 ‘연약한’ 쪽을 향해서 변화하게 된다. [지배연합의] 조정이 내구적인 협정에 기초한 권력을 더 커지게 만든다면, 제도는 더 복잡해지고 조직은 더 정교해지며, 사회는 자연국가 진보의 ‘성숙한’ 쪽을 향해서 변화하게 된다. 자연국가의 진보를 거쳐서 정부가 더 정교하게 되고 제도화되면 충격에 대해 더 큰 복원력을 갖게 된다. 연약한 자연국가보다 더 안정적인 성숙한 자연국가는 기본적 자연국가보다 더 안정적이다. 우리는 자연국가의 진보 - 연약한, 기본적, 성숙한 - 를 자연국가가 지지할 수 있는 조직에 따라서 정의한다. 조직적 정교화가 증대함에 평행하여 제도적 정교화가 증대한다.”(NWW, 2009, 73-74).

길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자연국가’는 오로지 엘리트의 협력을 유지하고 렌트 수취를 보장하는 지배연합 그 자체이거나 제3자적 집행자(enforcer)로만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¹⁴⁾ NWW(2009)가 지배연합의 렌트 수취와 국가의 조세수취 간의 갈등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은 국왕도 자신의 영지수입으로 ‘自活’해야 하였던 전근대 유럽의 봉건국가를 모델로 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 점에서 국가를 고찰할 때 조세수취자로서의 국가(Levi, 1988)와 지배연합으로서의 자연국가(NWW, 2009)를 통합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편, 엘리트와 대중 간의 갈등과 정치체제의 변동에 관해서는 Acemoglu and Robinson(2006)의 연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엘리트와 대중(citizens)은 서로 이해관계가 상반되기 때문에 엘리트는 독재를, 대중은 민주주의를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는 대부분 엘리트가 수용함으로써 성립되었다는 퍼즐을 풀고자 하였는데, 엘리트와 대중의 전략적 행동을 가정하고 있는 이 모델은 엘리트가 대중을 억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충분히 크고, 대중이 엘리트의 양보에 대한 약속을 믿기 어려울 경우에 엘리트는 민주주의를 강요받게 됨을 보여준다. 정치·경제적 위기상황에서 대중은 엘리트를 위협하여 양보를 강요할 수 있지만, 이러한 위기는 일과적이기 때문에 양보의 약속은 엘리트의 미래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막을 수 없다. 따라서 대중은 엘리트가 양보를 반복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또 엘리트는 시민에게 신뢰를 얻기 위하여 민주주의적 정치체제를 수립한다는 것이다

이 모델의 요점은 정치적으로 강력한 집단(엘리트)은 자신의 권력을 약화시키도록 스스로를 구속(commit)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민주주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역사적으로 사회적 불안과 폭력을 억제할 수 없을 때 엘리트에 의해서 창설되는데, 대중의 생활이 악화되는 조건과, 대중이 혁명을 조직하는 데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집단행동의 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조건이 합치되면 혁명이 임박하게 된다. 혁명이 임박하였다고 하더라도 엘리트의 양보가 없으면 민주주의는 수립될 수 없으며, 수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 경제적 불평등이 심하고, 엘리트의 자산이 쉽게 국유화되거나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 또 엘리트들이 새로 수립되는 정부의 행동을 일정한 범위 안으로 제

14) NWW(2009, 74-75)는 자연국가에서의 국왕은 지배연합의 우두머리로서 법 위에서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 같지만 국왕은 지배연합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해야만 하며 이에 실패하였을 경우 정변과 무질서가 초래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한할 수 있는 헌법을 기초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주주의는 혁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수립되지 않는다. 혁명의 위협으로 엘리트가 양보하더라도 민주주의로 제도화되지 않으면 미래의 엘리트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막을 수 없으며, 민주주의가 엘리트에게 너무 큰 손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설계되지 않으면 엘리트는 정치권력의 약화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독재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민주화)의 조건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1) 시민사회: 엘리트가 양보를 하는 것은 대중들이 혁명으로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인데, 시민사회가 발전하고 조직화되어 있으면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혁명의 위협”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2) 충격과 위기: 전쟁을 비롯하여 불황이나 흉작, 교역조건의 악화 등의 정치경제적 위기에는 대중이 사실상의 권력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의 권력은 미래에도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다. (3) 수입의 원천과 부의 구성: 엘리트의 소득의 원천이 민주화에 대한 엘리트의 태도를 좌우한다. 토지가 중심인가 자본이 중심인가가 중요하다. 토지는 자본보다 조세부과에 편리하기 때문에 민주화는 정치변화로 인한 소득재분배가 용이한 토지 소유자에게 더 불리하다. 혁명으로 인한 사회혼란은 자본 소유자가 ‘협력’에 더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더 위협적이다. 지주제가 발달한 경우에 민주화는 소작인의 토지재분배 요구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토지소유 엘리트들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매우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될 것이다.

(4) 정치제도: 민주주의 정치제도라도 의사결정은 다양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다수의 힘을 제한하도록 설계된다면 엘리트의 양보를 더 쉽게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5) 그룹 간 불평등: 엘리트와 대중의 그룹 간 불평등이 커지면 민주주의를 통해서 부를 재분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커지므로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게 될 것이다. (6) 중간계급: 중간계급은 민주화의 추동자(driver)로서 엘리트가 중간계급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게 되면 점진적인 민주화가 진행되며, 중간계급은 엘리트와 대중 사이의 완충자(buffer)로서 급격한 부의 재분배를 선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재분배를 제한하여 엘리트의 반발을 억제함으로써, 민주주의를 공고하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7) 세계화: 주변에 민주주의 국가가 존재하는가, 그리고 민주화에 대한 압력이 존재하는가도 민주화의 요구를 강화시키고 민주화에 대한 반동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게 될 것이다. (8) 정치적 정체성과 갈등의 성격: 다원화된 사회는 단일한 집단행동을 곤란하게 만들고

부의 재분배를 요구하는 경향을 낮춤으로 엘리트에게 민주화의 위협이 크지 않도록 만들게 되며 이에 따라서 민주화가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다.

이상에 살펴본 Acemoglu and Robinson(2006)의 모델은 우리의 문제의식과는 정반대이지만, 엘리트에 의한 독재가 장기간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을 분석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요컨대 민주화의 조건을 뒤집으면 독재 체제의 장기지속의 조건은 (1) 혁명을 유발하는 정치경제적 위기의 부재, (2) 미약한 시민의 집단행동, (3) 엘리트의 강력한 억압(양보 거부)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대중이 사실상의 권력을 장악하기 용이한 정치경제적 위기가 전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인데, 이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위기가 발생할 때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체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둘째는 정치경제적 충격이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정치적 요구가 크지 않다면 이는 대중이 혁명이 가진 무임승차적 속성으로 인한 집단행동의 난점을 해결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는 엘리트가 대중을 억압하는데 성공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엘리트가 억압적이 되는 것은 엘리트에게 민주주의로 초래되는 비용(손실)이 매우 크기 때문인데, 특히 엘리트의 재산이 주로 토지인 경우에는 자본에 비하여 과세가 용이하고 재분배되기 쉽기 때문에 대중의 요구에 양보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다. 동시에 민주화의 추동자이자 완충자의 역할을 하는 중간계급의 성장이 미약한 경우에도 엘리트의 양보를 얻기 힘들기 때문에 정치체제의 변화가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비민주적 정치체제의 장기지속의 경제적 조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초점은 지배연합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렌트의 보장과 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배연합의 적절한 조정, 지배연합의 조정과 정부 조직의 비인격적인 제도화,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제약하는 경제구조, 특히 토지 중심의 엘리트의 부 구성, 상공업과 중간계급의 미약한 성장, 그리고 대중의 '준 자발적 복종'과 집단행동의 문제이다.¹⁵⁾ 먼저 엘리트에 대한 렌트의 보장과 적절한 배분이 이루어져

15) 이와 같이 정치체제를 포함한 제도가 변화하기 어려운 보다 심층적인 이유는 제도가 경로의존성(path dependancy)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헌법과 같은 제도의 창설에는 비용이 소요되며, 이러한 제도가 일단 창설된 후에 구성원에 의한 적용과 학습이 이루어지고(비용 투입), 새로운 제도의 기반이 되거나 비공식적 제도를 창출함으로써 제도들 간의 상호의존망이 확장됨에 따라서 인구 당 제도 이용의 비용이 감소될 것이라는 점에서 제도는 수확체증적 성격을 갖고 있다(규모의 경제). 또한 기존 제도에 이해관계를 갖는 이익집단이 발생하게 되고 이들이 정치조직을 형성하게 되면 제도는 변경하기 매우 힘들

하며 지배연합의 구성이 환경의 변화에 조응하여 적절히 조정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배연합의 충원과 조정이 제도화되고 정부조직도 정교해짐으로써 충격에 대해 강한 복원력을 가지게 되는 것도 비민주적 정치체제의 안정성에 기여할 것이다. 납세자 대중이 국가에 협조하고 반란과 같은 집단행동을 기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복종에 대한 처벌과 같은 ‘선택적 유인’도 있어야 하겠지만, 대중의 부담에 대해 반대급부를 제공함으로써 ‘준-자발적 복종’을 유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자연국가의 ‘접근개방사회’로의 이행, 또는 독재로부터의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저지하는 경제구조도 비민주적 정치체제의 장기지속을 위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상공업의 미약한 성장과 토지 중심의 엘리트의 부 구성은 엘리트의 양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므로 정치체제의 변화를 억제할 것이다. 정치적, 경제적 위기는 대중의 집단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을 높이게 되는데, 대중의 생존의 위기가 혁명을 야기하는 정치적 위기까지 변화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갖추어져 있을수록 정치체제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Ⅲ. 엘리트(양반)의 협력과 렌트

‘자연국가’를 형성하는 지배연합은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문화적 자원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발생하는 렌트를 향유한다(NWW, 2009). 조선왕조의 장기지속은 지배연합의 구성원인 엘리트에게 렌트를 공급함으로써 엘리트의 협력(충성)을 획득하지 못하였다면 불가능하였을 것이다.¹⁶⁾

그러나 조선왕조의 지배연합의 자격과 구성을 밝히는 일은 쉽지 않다. 조선왕조

어지게 되며, 전체 사회의 경제적 성과에 부정적인 효과를 갖는 제도도 장기적으로 존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 왕조의 창설에는 실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경제적 성과에 따라서 간단히 국가나 왕조가 교체될 수는 없다는 점은 명백할 것이다.

16) 지배연합 내의 권력 게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본고의 관심과는 차이가 있지만, “지배연합”의 개념을 이용하여 조선왕조의 정치를 분석한 연구로는 강광식(2000)이 유일한 것 같다. 특히 제1부 제2장 “신유학사상과 조선조 유교정치체제의 지배연합”을 참조(61-107). 전략집단을 군왕과 신하로 나누고 다시 신하를 국왕과 사적 관계에 있는 王臣(功臣, 戚臣)과 공적 관계에 있는 士臣으로 나누어 이들 3자간의 제후관계에 따라서 어떻게 지배연합이 변화하는가라는 관점에서 조선왕조의 정치사를 이해하고 있다. 조선왕조의 지배연합은 군왕의 권력의 소장에 관계없이 군왕을 매개로 지배연합이 결성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해하고 있다.

초기의 신분제는 良賤制였으며 과거에 합격하여 관직을 취득한 관인들은 있었지만 양인에게 관직이 개방되어 있었다는 입장(한영우, 1983; 유승원, 1987)이 있는 반면에, 양반은 고려시대부터 연속성을 가지고 존속하여 조선시대 초기부터 양인과 확연히 구별되는 신분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견해(송준호, 1987; 이성무, 1990; Duncan, 2000)가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⁷⁾ 조선후기에 대해서도 양반층이 급증함으로써 양반 신분 자체가 허구화되어 가고 있었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지만,¹⁸⁾ 이에 대립하여 양반이 일반 상민과 구분되는 신분으로서 뚜렷한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으며(송준호, 1987) 양반의 지위는 강고하게 유지되어 신분제는 허구화되는 것이 아니라 “班常制”로 변화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김성우, 2001a). 四方博(1938)의 대구호적에 대한 수량적 연구 이후 조선후기 신분제 해체설은 상식이 되어 있지만, 입론의 근거가 되었던 호적의 성격과 직역에 대한 이해가 비판받고 있는 상황이다.¹⁹⁾

조선 초기의 지배연합이 양인에게 완전히 개방되어 있었다고 보는 관점은, 조선 왕조로의 왕조 교체를 ‘자연국가’로부터 ‘접근개방사회’(open access society)로의 이행으로 파악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지배연합의 규모나 구성에 있어 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다음의 인용문은 세조 13년(1467)에 함길도에서 발생한 李施愛 난의 대책에 대하여 大司憲이었던 梁誠之가 올린 상소문으로 송준호(1987, 176-178)가 조선초기 양반의 존재와 연속성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역대 왕조가 중국에 비하여 장기간 존속한 원인은 “大家世族”이 중앙과 지방에 분포되어 있어 반란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인데, 함길도에는 노비가 없어 대가세족이 없기 때문에 반란을 막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중국은 堯舜代로부터 오늘의 大明帝國에 이르기까지 왕조가 23번이나 바뀌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檀君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겨우 7왕조가 교체되었을 뿐인데 그 이유가, 물론 중국과 우리나라와의 사이에 풍속의 淳하고 薄한

17) 이성무(1990)와 송준호(1987)의 입장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송준호(1987)는 이성무(1990)의 논의가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18) 일반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정석중(1983)을 들 수 있을 것이다.

19) 이에 관해서는 김성우(2003), 정진영(2003), 역사와 현실 편집부(2003), 송양섭(2005)을 참조.

차이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는, 우리나라에는 많은 大家世族이 京鄕 각지에 있어 그간에 혹 姦雄이 나타나 반란을 꾀한다 하여도 기회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더욱 염려가 됩니다. 대저 대가세족이 대가세족으로 존립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노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략) 저 咸吉道 각 군에 (타도와 마찬가지로) 대가세족이 수십 가만 있었다면 吉州의 李施愛가 어찌 능히 도내 전역을 (그렇게 단시일 내에) 휩쓸 수가 있으며, 그곳에 근무하던 朝臣들(즉, 중앙에서 임명되어 나간, 수령을 비롯한 각급관리) 중 나라와 임금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며 싸운 충신이 단 한사람도 없다는 그러한 일이 또 어찌 일어났겠습니까. 이것이 모두다 그 지방에 노비가 없기 때문이요 노비가 없는 것은 대가세족이 없기 때문입니다.²⁰⁾

과거에 응시하고 관직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양반으로 제한하는 법률이 없었다는 점에서 조선왕조의 신분제도는 개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과거에 응시하는 개인은 개인이 독립적으로 평가되는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며, 가족, 가문, 씨족, 신분이라는 촘촘한 관계를 체화한 채 존재하고 있었다. 사회 구성원이 법 앞에서 평등하며 구성원 간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비인격적인 성격을 갖는 ‘접근개방 사회’와 달리, ‘자연국가’의 사회관계는 인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양천제 신분제였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응시할 때 자신이 천인이 아님을 증명해야 하는 것부터 각자 어떠한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존재하고 있느냐가 항상 식별되고 의식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법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배 연합에 소속될 수 있는 자격, 구체적으로 양반의 자격을 명확히 하는 것은 쉽지 않다.²¹⁾ 宮嶋博史(1995, 22)는 조선시대 在地兩班의 자격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20) 『세조실록』 13년(1467) 8월 6일자 양성지의 상소. 송준호(1987, 177-178)의 번역문을 따랐으나 ‘노예’는 원문에 따라 ‘노비’로 고침.

21) 법적인 기준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양반의 기준이 불명확한 것은 아니었다. 송준호(1987, 4)는 양반의 자격요건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양반이란 현실적으로, 先系가 분명하고, 그 선계 중에 세상이 알만한 顯祖 즉, 有名先祖가 (이른바 始祖 외에 또) 있어 그들이 현조 누구의 (또는 현조 누구누구의) 후손이라는 것이 확실하며 일정한 世居地가 있고 그 世居地를 무대로 하여 영위된 양반가문으로서의 역사와 그 역사 과정에서 축적된 양반가문으로서의 전통이 분명한 사람들이었으며 따라서 그러한 자격요건은 돈으로 산다거나 향쟁을 통해 쟁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결코 아니었다.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양반으로 만든다는 것은 국왕의 권력이나 위신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었다.”

- (1) 과거합격자, 또는 과거에 합격하지 않더라도 당대를 대표할 정도의 고명한 학자를 선조로 가지고 있는 동시에 그 선조로부터의 계보관계가 명확할 것.
- (2) 수대에 걸쳐 동일한 村(集落)에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을 것. 이러한 대대로의 거주지를 世居地라고 말하고 세거지에서는 양반가문이 同族村(集落)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 (3) 양반적인 생활양식을 지키고 있을 것. 양반적인 생활양식이란 조상제사와 손님(客)에 대한 접대(奉祭祀, 接賓客)를 정중하게 행함과 함께 일상적으로는 학문과 자기수양에 힘쓰는 것이다.
- (4) 대대로의 결혼상대, 즉 姻族도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만족하는 집단으로부터 선택되고 있을 것.

조선왕조는 초기부터 왕조 개창에 참가한 인물을 중심으로 지배연합이 형성되어 있었으며,²²⁾ 법적 규정이 없는 것이 자연국가의 ‘인격적’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며,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지배연합에 속할 수 있는 자격이 법률에 의해서 쉽게 변경될 수 없는 자율성을 가지는 동시에, 구성원을 선택할 수 있는 신축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성문법의 부재가 규칙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지배연합의 내부적 규율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공식적·비공식적 처벌을 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이해일 것이다. 다만 조선왕조의 경우에 지배연합의 일원이 되는 자격에 科擧 합격과 관직 획득이 관건이었으며, 관직이 세습되지 않고 경쟁이 치열하였다는 점에서 전근대 유럽이나 일본과 대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미야지마, 2003, 2008). 이점은 조선왕조 지배연합의 양면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지배연합의 충원이 과거제라는 매우 ‘내구적인’ 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동시에 환경의 변화에 조응하여 그 구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신축성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조선왕조의 엘리트들이 취득하는 렌트는 대부분 국가 조직의 일원, 즉 관료가 되

22) 이와 관련해서는 Duncan(2000)을 참조할 것. 이에 따르면, 조선왕조의 개국에도 불구하고 조선왕조의 지배 엘리트는 고려왕조와 강한 연속성을 지니고 있었다. 조선왕조 초기의 태조, 정종대 관료를 검토한 결과 고려말기인 14세기 중엽에 새롭게 등장하는 가문은 전체의 10% 정도에 불과하였다. 또한 1430-32년의 293명의 관료 중에 182명(62%), 48명의 宰樞 중에 40명이 세습적인 양반가문 출신이었다. 또한 1455-57년의 337명의 관료 중 246명(65%), 재추 46명중에 44명이 유명한 세습 양반가문 출신이었다.

거나 그와 관련을 가짐으로써 획득하는 것이었다. 조선왕조에 있어서 가장 방대한 조직은 국가 자체이며 국가 외부에 형성된 조직의 발달은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²³⁾ 특히 경제적 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업회사와 같은 ‘계약적 조직’(contractual organization)의 발달이 미약하였기 때문에 국가 외부에 조직을 형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렌트를 취득하는 길은 거의 없었다. 특히 조선왕조의 양반이 상공업에 종사하는 것은 금기시되었으며, 상공업자는 천민과 마찬가지로 과거에 응시할 수 없어 관직 진출이 봉쇄되어 있었다.²⁴⁾

조선왕조에 있어서 국가 조직의 일원이 되는 방법은 관직, 특히 고위관직(堂上官)을 획득하는 길이 거의 유일하였으며, 과거 합격(특히 文科 합격)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었다.²⁵⁾ 과거응시 자격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개방성을 두고 입장이 나뉘어져 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제한이 명확해진 것은 분명하다.²⁶⁾ 경쟁에서 승리하여 관직을 획득함으로써 지배연합에 진입한 양반은 자신의 지위를 후손에게 전하고자 노력하였을 것이므로 과거제도나 승진체계에 관직 보유자의 이익이 반영되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축소된 형태이기는 했지만 조선왕조에서도 蔭敍제도가 관직 획득의 방법으로서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점하였다. 조선

23) 상인들에 의한 회사조직의 미발달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신라, 고려시대 이래의 燃燈會, 八關會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香徒, 그리고 조선후기에 크게 발달하고 있는 각종 契 등과 같은, 국가 외부의 조직에 관해서는 좀 더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이에 관해서는 김필동(1992)을 참조). 특히 조선후기에 계의 발달은 자연국가의 안정성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19세기의 농촌의 계의 상황에 관해서는 김재호(2001a)를 참조.

24) 국가 외부에 형성된 조직은 가족, 가문, 씨족과 같은 ‘원초적 조직’(adherent organization)이 대부분이었다고 생각된다. 계약적 조직과 원초적 조직의 구분에 대해서는 NWW(2009, 16-36)을 참조. 조선왕조 양반들은 향촌에서 국가 외부에 留鄉所나 書院 등을 통해서 독자적인 조직을 만들고자 하였으나 국가로부터 독립된 조직을 가지기는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在地 양반의 조직화에 관해서서 士林, 朋黨政治(黨爭), 留鄉所, 書院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다. 우선 이태진(1986, 125-185)과 이태진(1989, 175-209)을 참조). 사립, 나아가 당파의 형성을 국가 외부의 조직 형성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 내부에 들어가 보면 ‘계약적 조직’이라기보다는 가문을 중심으로 한 ‘원초적 조직’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차장섭, 1997).

25) 과거제도에 관한 종합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이성무(2000)를 참조.

26) 일례로 과거응시자에 대해서 당초 錄名官으로 하여금 응시자의 四祖單子를 확인하도록 하였지만 응시자의 증가로 검토가 곤란해지자 중종 35년(1540)에 防奸節目을 제정하여 사조단자 외에 신분을 보증하는 保單子를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친족이나 평소에 친분이 있는 고위 관료가 작성하거나 그것이 어려우면 京在所 관리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하였던 것이다(차미희, 1999, 28-29). 이러한 응시요건은 명백히 양반들의 ‘인격적’ 관계에 의한 응시자 선별을 의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초기 議政 등 樞要職 책임자의 30% 이상이 음서와 음서 후 문무과 급제자였던 것이다(한충희, 1995). 더욱이 서울 중심의 기존 양반층에 유리한 부정기적인 別試가 증가하고 관직 진출에 출신 가문과 지역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소수 가문에 의해서 관직이 독점되는 경향이 강해졌으며, 이에 따라서 “閹閹”이 성립되었던 것이다(차장섭,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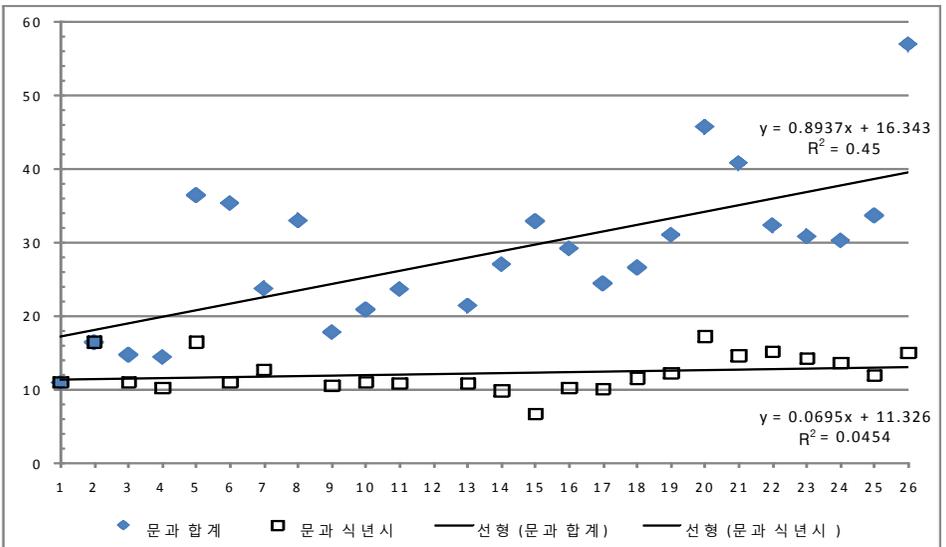
그러나 조선왕조의 장기지속이라는 점과 관련해서는, 조선왕조가 다수 엘리트들이 소수의 관직을 두고 경쟁하는 개방적 성격을 왕조 끝까지 유지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강력한 별열이라도 과거제의 틀을 유지하여야 하였으며, 자신의 관직을 자손에게 세습하는 제도를 만들지는 못하였기 때문이다. 차장섭(1997)에 따르면, 조선전기과 후기의 별열에 매우 큰 변동이 있었으며, 별열 형성의 조건은 기본적으로 “관인적 기반”이었다(29). 조선후기 별열의 입사경로에서 ‘기타’를 제외한 전체인원 2,227 명 중에 文科 출신은 1,406명(63.1%), 武科 출신은 346명(15.5%), 遺逸 59명(2.7%), 蔭敍 416명(18.7%)이었다(62-64).²⁷⁾ 明清시대의 중국과 비교하여 조선왕조의 과거제에 있어서 소수 동족집단(姓貫)에 文科 합격자가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였다는 점이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조선왕조의 과거제도는 왕조 말까지 개인의 능력이라는 요소를 버릴 수는 없었으며 이러한 점에서 “언제나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개방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것이 곧 체제의 안정과 왕조의 長命에 기여한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이다.”(와그너, 2007[1974], 29). 단 이때의 개방성은 어디까지나 지배연합의 존재를 전제로 한, 조선왕조 지배연합 특유의 운동방식으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문과는 3년마다 실시되는 式年試와 기타 특별한 경우에 시행되는 부정기적인 別試로 나눌 수 있는데, 조선왕조 전 기간에 걸쳐서 합격자는 14,683명으로 집계되고 있다(미야지마, 2008, 216). <그림 1>에서 보듯이 식년시와 별시를 합하여 연평균 29.2명이 문과에 합격하였던 셈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추세적으로 문과 합격자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정기적인 식년시는 거의 고정되어 있었던 반면에 부정기적인 여

27) “결국 3세대 이상에 걸쳐서 각 세대마다 堂上官 이상의 官人을 배출하면서, 父, 祖, 曾祖 가운데 1인이 반드시 堂上官 이상의 관인일 때 그 가문은 閹閹로 분류될 수가 있었다.”(차장섭, 1997, 30). “조선후기 별열은 인조-경종 연간에 성립되어 영조 이후 고정되어 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별열을 기준으로 조선후기를 구분하면 선조-광해 연간은 과도기, 인조-경종 연간은 성립기, 영조-정조 연간은 성장기, 순조-고종 연간은 극성기로 파악된다.”(같은 책, 62).

리 명목의 별시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관직수는 經國大典(1485년 반포) 단계에서 京外 文武 雜職을 통틀어 正職 5-6천여 직, 兼職 110-600여 직의 규모였다. 그 중에 핵심 요직은 10여 直啓 文翰衙門의 100여 堂上官을 중심으로, 正品 堂下官과 議政府, 六曹, 三司의 參上官을 포함한 300여 직이었다(한충희, 2004, 25).²⁸⁾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관직이 양반 자격의 필요충분조건은 아니었지만, 이 정도 규모의 관직을 목표로 과거에 응시하여 관직 진출에 성공하거나, 반드시 본인이 아니더라도 관직에 진출한 자가 속한 가족과 가문으로 대강의 범위를 정할 수 있을 것이다. 국초의 관직 수는 이후 거의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 합격자의 관직 경쟁은 시간이 흐를수록 치열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림 1〉 조선왕조 왕대별 문과 연평균 합격자 수



자료: 미야지마(2008, 216)에서 작성(원자료는 송준호·와그너, 보주 조선문과방목 CD-ROM).
 주: 1. 태조, 2. 정종, 3. 태종, 4. 세종, 5. 문종, 6. 단종, 7. 세조, 8. 예종, 9. 성종, 10. 연산군, 11. 중종, 12. 인종, 13. 명종, 14. 선조, 15. 광해군, 16. 인조, 17. 효종, 18. 현종, 19. 숙종, 20. 경종, 21. 영조, 22. 정조, 23. 순조, 24. 헌종, 25. 철종, 26. 고종.

28)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경국대전』 상으로 文班은 正職 613, 兼職 101, 武班은 정직 4,390, 결직 10 개소이며(잡류직은 인원 불명). 이 가운데 외관직은 문관 790, 무관 500, 합계 1,290 개소였다. 그리고 직위의 고하에 따라서 堂上 148, 堂下 269, 參上 866, 參下 3,558 개소였다(한충희, 2004).

국가 외부에 계약적 조직이 희소한 상황에서는 국가가 렌트의 주된 원천일 수밖에 없다. 이로부터 취득하는 렌트는 ‘직접적’ 렌트와 ‘간접적’ 렌트로 유형을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자는 국가 재정, 또는 국가적 재분배 기구를 통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특권적인 접근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획득되는 것이며, 후자는 지배연합의 ‘인격적’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국가권력을 사적으로 동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획득되는 것이다.

‘직접적’ 렌트는 국가로부터 지급되는 녹봉(조선 초에는 전 현직관료의 科田도 포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조선왕조의 녹봉의 규모는 관료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았기 때문에²⁹⁾ 재정운영과 관련된 비공식적 수입의 존재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주된 원천은 지방재정을 비롯한 국가재정, 그리고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던 상업부문이었으며, 렌트는 이러한 원천으로부터 관료가 행사하는 재정운영에 대한 재량권과 상업부문에 대한 규제에 의해서 발생하였다.

먼저 관료들은 貢納制의 운영과 관련하여 防納으로부터 이익을 취하였다. 貢物은 본래 지방관이 직접 중앙 관청에 상납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지만, 현실에 있어서 공물의 수량과 품목을 적은 문서(陳省)를 획득한 방납인이 공물을 납부한 다음, 지방관으로부터 貢物價를 징수하는 방납이 관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가격차에 의한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였으며, 영의정을 비롯한 당대의 정치적 실력자들이 방납의 주체 또는 배후로서 지방관과 결탁하거나 방납을 강요하고 있었다.³⁰⁾ 이와 함께 貢人이나 市廩으로부터 관련 관청이나 관료들에 대한 상납이 관행되었으며,³¹⁾ 조선왕조의 국제무역의 대종은 조공 사절이 주체가 된 공무역이거나 이로부터 파생된 것이었기 때문에 사절단에 참가하는 것이 취리의 기회가 되었다.³²⁾

더욱 주목되는 것은 양반 간의 “선물경제”가 지방재정을 원천으로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이다(이성임, 2005). 조선왕조의 양반들은 생활에 필요한 재화를 주고받고

29) 1867년에 간행된 『六典條例』에 의하면, 1년간 관원에게 녹봉으로 지급하는 廣興倉의 곡물은 쌀로 환산하여 2만 5천 석이었는데, 官員은 겸직을 일부 포함하여 4,659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1인당 1년간 쌀 5.37석에 불과하였음을 의미한다(김재호, 2007, 19-20).

30) 방납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 기존 연구에 관해서는 김재호(2004, 56-58)를 참조. 강제훈(2002)은 방납을 통해 권력과 유착하여 富商으로 성장한 한 상인(許繼智)의 사례를 알려주고 있다.

31) 최근의 연구로 스카와(2010)과 밀러(2010)를 참조.

32) 조선왕조를 포함한 전근대 한국의 무역에 관해서는 이현창(2004b)이 개관하고 있음.

있었는데 주 원천이 지방재정이었다(이성임, 1995, 2004, 2005).³³⁾ 조선왕조의 지방재정은 국가재정에 거의 통합되어 있지 않았으며 지방의 관행에 의해서 수취되는 수입을 가지고 있었다.³⁴⁾ 무엇보다 중앙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과세면적(結)과 인구(戶口)는 실상과 큰 차이가 있었다.³⁵⁾ 지방관은 가족의 생활과 족보 편찬과 같은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도 재정수입을 사용하였으며, 자신과 친분이 있는 관료들에게 지방재원으로부터 각종 생활물자를 선물하는 한편, 비공식적인 상납 분을 추가하여 부세를 납부하였다. 이영훈(2000, 20-25)이 “貢膳의 緣網”이라고 명명하였던 바와 같이 지배연합의 구성원인 엘리트 사이의 호혜적 거래가 국가적 재분배기구를 매개로 하여 확장된 형태로 ‘선물경제’로서 성립해 있었던 것이다. 지방재정을 원천으로 양반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비공식적인 거래 행위는 법적인 근거나 규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며 ‘자연국가’의 ‘인격적’인 관계에 기초하여 행해지는 것이었다. 양반 간의 관계는 혼인과 같은 혈연적 결합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제적 호혜관계를 통해서 유지되었던 것이며, 이러한 ‘선물경제’의 관계망에서 탈락되었을 때 더 이상 양반, 즉 지배연합의 일원임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을 것이다. 이점에서 이러한 호혜적 거래관계는 지배연합을 규율하는 제도로서도 기능하였다고 생각된다.

한편 ‘간접적’ 렌트와 관련하여, 지배연합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재산권의 보장에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무엇보다 사적인 무력을 보유하지 못한 양반은 재산권의 안전에 국가에 의한 보호가 불가피하였기 때문이다. 조선왕조가 經國大典을 비롯한 법전의 편찬에 노력하였기 때문에 ‘법에 의한 지배’를 지향한 것으로 보이지만, 자연국가적 특성을 반영하여 국가가 공평무사한 제3자일 수 없으며 법은 권력의 분포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된다. 가장 중요한 재산인 토지와 노비의 재산권에 관해 법적인 규정이 있었지만, 재산권이 단지 법의

33) 이성임(2005, 53-4)에 의하면, 관직에 오르면 생기는 수입원은 두 가지로 대별된다. (1) 仕宦의 대가로 국가로부터 받는 祿俸, 丘從, 伴人 등으로서 “이는 관인이 청렴하게 관직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物的·人的 재원이다. 이러한 수입은 공식적으로 제도화된 수입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2) 수령이 개인적인 재량에 따라서 지방재정의 일부를 제공하는 것이다.

34) 지방재정에 관해서는 장동표(1999), 김덕진(1999), 손병규(2008)를 참조. 지방재정의 규모는 김재호(2008), 이우연(2010a)을 참조할 것.

35) 권태환·신용하(1977)는 실제 인구수를 국가가 파악한 口數의 2.5배 정도였다고 판단하여 조선시대 인구를 추정하였다.

공포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비교사적으로 보아 조선후기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매우 배타적인 것으로서 근대적인 것에 가깝게 발전하였음이 인정되고 있지만(배항섭, 2010), 아직 소유권 증명에 대한 제도가 완비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며, 모든 사회관계가 ‘인격적’이라는 특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조건에서는 국가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재산권 보장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조선왕조의 엘리트들은 국가의 제3자적 집행능력을 기대할 수도 있었지만³⁶⁾ ‘선물경제’를 통해서 형성되고 유지되는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재산권의 문제에 대처하였다고 생각된다.³⁷⁾

도망노비의 추적(推刷)과 노비신분의 세습에는 국가의 보장이 더욱 필요하였다. 조선왕조는 노비에 대해 주인이 私刑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하고 있었으며, 주인에 대한 불복종이나 도망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하였다(지승중, 1995, 317-342). 大明律은 主奴 관계에 대해 부자 관계와 유사한 죄를 적용하였지만, 조선왕조는 한 단계 더 엄한 君臣 관계에 준하여 경미한 반항도 綱常 범죄로서 가혹하게 처벌하였다.³⁸⁾ 국왕(仁祖)이 “叛主한 奴를 그 주인이 죽이는 데 무슨 거리낌

36) 조선왕조는 개인 간의 토지매매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면 제3자적인 심판관의 역할을 자임하였다. 토지에 대한 조사가 행해졌으며(量田), 사적으로 거래되는 토지매매에 대하여 국가는 확인을 요구하였다(立案). 『經國大典』(戶典 田宅)에는 소유권 분쟁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5년을 시효로 제한하였지만, 6가지의 예외규정을 두어 중대한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무기한으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었는데, 소작인의 경작권을 부인함으로써 양반의 경제적 기반이었던 지주제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박병호, 1972).

37) 무엇보다 국가권력의 말단에서 수령이 보유하고 있었던 사법적 재량권으로 인하여 사법제도가 강한 인격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수령의 제반업무에 관해서는 이회권(1999)을 참조. 조선시대에는 지방 郡縣에 대한 통치가 행정권, 사법권, 군사권이 분화되지 않은 형태로 수령에 일임되어 있었다. 수령은 공노비 추쇄나 유형자의 처리, 소유권 관련 업무 등의 사법행정업무를 관장하였으며, 죄인을 囚禁, 訊問, 처단하는 行刑權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제반 민형사 사건의 판결권을 가지고 있었다(같은 책, 133-134).

38) 노비는 謀叛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주인을 고소할 수가 없었으며 고소하는 경우에는 死刑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노비가 주인을 구타하면 참형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노비가 주인이나 그 부모 및 외조부모를 謀殺하는 경우에는 미수인 경우에는 참형, 살해하였을 경우에는 凌遲處死(車裂處死)의 최극형에 처하도록 하였다. 구타나 살해뿐만 아니라 사소한 신체적 접촉만으로도 구타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였다. 주인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絞刑에 처하도록 하였다. 또한 犯姦의 경우에도 교형을 비롯한 가혹한 처벌을 하였으며 심지어 속량된 이후 舊主에 대해서도 本主에 대한 처벌에 減1등, 減2등으로 하여 처벌하게 하였다. 한번 主奴관계가 맺어지면 속량된 이후에도 기존의 주노관계에 준하

이 있겠는가”라고 할 정도로 주인에 의한 노비의 학대나 살해는 묵인되었다(김용만, 1997, 381). 그러나 도망노비의 추적은 국가기관이 아니라 주인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지승중, 1995, 343-350) 국가의 법과 처벌만으로는 부족하였다. 노비가 도망하였을 경우에 주인은 개인적인 관계망을 이용하여 지방 수령에게 청탁(稱念)하였으며, 여의치 않은 경우에 도망노비가 거주하는 지방관에 청원서(所志)를 제출하여 행정절차에 따랐다. 주인이 직접 추적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위험한 방법이었다(이혜정, 2010, 149-155).

조선왕조의 엘리트, 양반이 자신의 재산을 국가나 타인의 침해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법에 호소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었지만,³⁹⁾ 국가권력을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동원하기 위하여 직접 국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력을 보유하거나 그러한 위치에 있는 인물과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였다고 생각된다. 양반은 자신의 재산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국가를 필요로 하였으며 이것만으로도 국가를 지지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조선왕조의 엘리트에게 ‘직접적’ 렌트가 재산증식의 주된 원천이었음은 분명하지만, 토지와 노비에 대한 재산권 보장과 부세수취 과정에서 차별적 부과에 따른 ‘간접적’ 렌트도 그에 못지않은 중요한 원천이었다. 軍役의 면제와 같은 명백한 특혜뿐만 아니라 전세와 대동을 비롯한 일반적인 結稅, 그리고 民庫나 환곡의 운영에서의 차별은 그것이 경미하다고 가정할지라도 장기간 누적된다면 양반과 일반 상민 간의 재산증식에 큰 차이를 초래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렌트 획득에 국가 권력을 동원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지나친 국가 권력의 사적 이용은 국가의 제3자적 역할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대중의 반발을 야기함으로써 지배연합 전체를 위협에 빠뜨릴 것이다. 엘리트 개인의 이익과 지배연합 전체의 이익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지배연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배연합 내의 권력분포에 조응하도록 렌트를 적절히 배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을 고갈시키거나 납세자 대중의 반란을 야기할 정도의 과도한 렌트 추구는 제한해야만 한다. 조선왕조의 경우 지배연합 구성원의 숫자

는 관계가 지속되는 것으로 간주되었는데 이는 明律에서 속량된 이후에는 일반적인 관계로 바뀌었던 것보다 훨씬 가혹한 것이었다(지승중, 1995, 352-377). “자손, 처첩, 노비로서 부모, 가장의 비행을 고발하는 자는 모반, 반역을 제외하고는 교형에 처한다. 奴妻, 婢夫로서 가장의 비행을 신고하는 자는 장1백, 유3천리에 처한다.”(『經國大典』 刑典, 推斷 告尊長).

39) 조선후기의 재산권과 관련된 소송에 관해서 조윤선(2002)을 참조할 것.

가 많고 경계선이 불명확하며 구성원이 수시로 교체되고 있는 조건으로 인해서 엘리트 개인에 의한 단기적인 시간전망을 갖는 렌트추구 행위가 유발될 가능성이 컸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집단행동(Olson, 1965)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배연합 전체의 이익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없었다. 또한 지배연합의 범위가 넓으면 지지기반이 넓다는 점에서 안정적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 내부에 하위 집단이 발생하여 경쟁이 벌어질 위험성도 커지게 된다. 실제로 土禍와 당쟁(붕당정치)은 지배연합 내 하위 집단 간의 경쟁이 치열하였음을 보여주며, 이로 인한 정변으로 국왕이 대체되었던 것도 두 차례 있었다(중종반정, 인조반정).⁴⁰⁾

조선왕조의 장기지속은 이러한 지배연합 내의 분파 발생과 경쟁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지배연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하였음을 보여준다. 첫째로, 지배연합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지배연합의 규율 위반에 대한 공식적 비공식적 처벌이 존재하였다. 먼저 국왕에 대한 모반 사건에 대해서 연좌제를 통해 위반자와 그 가문을 완전히 파멸시킴으로써 지배연합의 일원으로 다시 재기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⁴¹⁾ 강력한 국왕은 전체 지배연합의 규율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국왕의 권력이 지배연합을 파괴하거나 그 구성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강력해지는 것은 전체 지배연합의 이익을 침해하게 될 것이다. 이에 조선왕조는 經筵, 臺諫 제도를 비롯한 왕권을 견제하는 정교한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⁴²⁾ 근본적으로 국왕의 財政에 대한 재량권이 제한되어 있었다. 이론적으로는 국왕이 왕도사상에 입각하여 재정운영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독자적인 수입원(영지 또는 특권적 해외 수입 등)이나 사적인 군사력을 거의 보유하지 못하였기 때문에⁴³⁾ 국왕의 엘리트에 대한 교섭력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 비하여 약하였던 것이다.

40) 이에 관해서 많은 연구가 있다. 이태진(1985), 김돈(1997, 2009), 김범(2007)을 참조.

41) 세조의 왕위찬탈에 대해서 반란을 꾀하였던 사육신을 비롯한 단종복위 세력에 대한 철저한 처벌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류영박, 1994).

42) 이에 관한 수많은 연구가 있다. 간명한 정리로는 최희수(2003)를 참조할 것.

43) 조선왕조의 왕실재정에 관해서는 송수환(2000)과 조영준(2010)을 참조. 조영준(2010, 131)에 의하면, 19세기 초에 왕실에 대한 공상은 정부재정의 약 9%수준이었다. 19세기 중엽에 왕실의 사적 재정(군방재정)은 쌀로 환산하여 약 15만석, 정부에서 지급하는 공적 재정은 약 10만석으로 양자를 합하면 25만석으로서 전체 중앙재정(왕실재정 포함) 115만석의 21.7%에 해당한다.

또한 관료의 부패 행위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었다(김재호, 2004). 조선왕조는 범죄에 대해서 大明律을 실정에 맞추어 조정한 大明律直解를 따랐는데, 관리의 부패는 정부의 재산을 훔치는 것과 남의 재물을 훔치는 것의 두 가지로 분류하여 처벌하였다.⁴⁴⁾ 이밖에 양반의 綱常 범죄를 담당하였던 義禁府와 같은 사법제도(이상식, 1977), 지방관을 감찰하는 暗行御史 제도(임병준, 2001)와 解由제도(임민혁, 2005, 2006)도 관리들의 부패를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이다.⁴⁵⁾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당시의 부패행위가 앞에서 살펴본 ‘선물경제’의 관행과 구별하기 힘든 것이었지만, 당대의 기준에서 용인할 수 없는 부패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엘리트들의 과도한 렌트 추구를 제한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밖에 ‘선물경제’의 네트워크에서의 추방을 비롯한 교제의 단절이나 통혼권에서의 탈락 등과 같은 비공식적 처벌도 생각해볼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지배연합 내의 개별 엘리트의 행동을 규율하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거나 집행이 되지 않았다면, 지방재정을 비롯한 렌트의 재원은 재산권이 설정되지 않은 ‘공유지’와 같은 성격을 지니게 되어 대중에 대한 과도한 수탈을 초래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점이다(the tragedy of the commons; Hardin, 1968).

둘째로, 조선왕조는 수도에 거주하는 관료가 엘리트의 핵심이었음에도 이들이 도시적 분파로 분화하는 경향을 제어함으로써 전체 지배연합의 농업적·농촌적 정체성을 유지하였다. 무엇보다 조선왕조의 도시 인구의 비중이 매우 낮았다. 이헌창(2006)에 의하면, 총인구에 차지하는 수도 인구의 비율은 고려시대에 3%, 조선초에 2%, 1800년경에 1.5% 정도로 하락하는 추세였다. 도시화율도 매우 낮아서 1800년경에 인구 1만 명 이상을 기준으로 2.4% (5,000명 이상을 기준으로 3.3%)에 불과하였다.⁴⁶⁾ 더욱이 양반은 관직에 얻어 서울에 거주하는 것은 선호하였지만,

44) 전자에 대해서는 대명률 ‘盜賊’의 ‘監守自盜倉庫錢糧’규정을 적용하여 관리의 부패는 국가의 저장물에 대한 절도로 인식되었다. 또한 刑律의 ‘受贓’규정에 따라 관리의 뇌물 수수를 처벌하였다. 관리와 吏屬이 뇌물을 받으면 액수에 따라서 처벌하는 한편 관직과 직역을 박탈하고 다시 임용하지 않도록 하였다(오수창, 1998). 『經國大典』에는 이를 더욱 강화하여 그 자손까지도 정치적으로 중요한 관직에 진출하는 것을 금지하였다(김성준, 1984).

45) 해유의 의미는 『萬機要覽』에 “考滿職除曰解 歷其殿最曰由”라고 하였듯이 “관리가 교체될 때 신관에게 인계하는 사무와 소관 기물을 자세히 기록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심사한 후 그 책임을 면하는 행정절차를 말한다.”(임민혁, 2005, 5).

46) 이 추정을 받아들인다면, 1800년경 총인구 1,650만 명 중에서 수도에 약 25만 명, 그리고 수도를 포함한 도시에 약 40만 명(5,000인 이상은 약 55만 명)이 거주하고 있었던 셈이 된다.

지방의 행정 중심지에 거주하는 것은 기피하였다.

그러나 서울은 상공업 인구의 비중이 예외적으로 높은 이질적인 지역이었기 때문에, 47) 서울에 거주하는 양반들의 경제적 기반도 농촌에 거주하는 재지 양반의 그것과는 다른 것으로 변화해갈 가능성이 있었다. 조선왕조 양반의 부가 기본적으로 토지와 노비에 기초하고 있었음은 분명하지만, 조선후기 18세기말 19세기 초 서울거주 한 재산가의 사례는 導掌權, 貢物主人權, 身貢主人權의 비중이 토지재산보다도 높았음을 보여주고 있다(이영훈, 2005, 38-39). 서울은 정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특히 조선후기에는 京江商人의 활동의 중심지로서 경제적 성격을 강화하고 있었다(고동환, 1998). 48)

조선왕조는 관직을 통해서 엘리트층을 서울로 집중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제를 통해 농촌에 기반을 둔 엘리트의 중앙정계로의 진출 경로를 유지함으로써 전체 지배연합의 농업적·농촌적 성격을 유지하는 데 성공하였다고 생각된다. 이는 근본적으로 조선왕조가 중앙집권적 국가이지만, 중앙에 거주한 도시적인 지배 엘리트가 농촌적인 지방을 강력한 군사력에 의해 지배하였던 것이 아니라 지방 엘리트의 협력 위에 기능하는 국가였기 때문일 것이다. 49) 이와 함께 상공

47) 조선전기에 10만 명 정도의 서울의 인구 중에 군인과 그 가족은 7,000여 명, 관리와 가족은 2-3만 명 정도였으며 이들을 포함한 군인, 관리, 왕실 소속인과 그 가족은 4만 명 내외로 추산된다. 조선후기에 서울의 인구는 20만 명 정도로 증가하였는데, 군인과 그 가족은 25,000명 내외로 증가하여 군인, 관리, 왕실소속인과 그 가족들, 그리고公私 노비를 합하면 서울 인구 중 3할 정도였다. 1909년의 民籍調査에 의하면, 서울의 조선인의 직업구성은 관리 3.8%, 양반 2.1%, 상업 24.7%, 농업 15.6%, 공업 6.0%, 日雇 17.7%였다(이현창, 2006, 13-16). 이외에 서울의 인구현상에 관해서는 고동환(2007)을 참조. 이현창(2006)보다 서울의 인구규모를 높게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1669년에 228,270명에서 증가하여 1780년에 313,294명, 1800년에 322,942명으로 증가하였다(고동환, 2007, 445).

48) 조선후기 서울의 경제중심지적 위치를 너무 적극적으로 인정할 필요는 없다. 이영훈(2010)에 따르면 19세기 서울시장과 남부 농촌시장 간의 가격추이는 두 시장이 잘 통합된 관계가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49) 조선왕조는 군사력이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NWW(2009)의 '개방집권사회'의 유형에 접근해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폭력이 국가에 완전히 집중되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국가가 가부장에 대한 사적 복수와 노비에 대한 私刑도 용인하고 있었으며 중앙과 지방에 산재한 행정·군사기관에서 발행하는 폭력에 대해서 국가가 중앙 집중적으로 철저히 통제하고 있었다고 생각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군사력이 국가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비교사적 특징은 인정해야 할 것이지만, 이를 근대국가의 그것과 같은 수준에서 생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업적 요소의 지배연합에의 진입은 후술하듯이 抑商정책, 상공인의 과거응시 금지, 그리고 私貿易의 금지를 통해서 철저히 저지되었다. 이러한 배제에 대해서 상공인의 집단적인 반발이 없었던 이유는 조선왕조 경제통합의 ‘국가적 재분배’ 성격으로 인해서 재정적 물류에 종속되어 있었던 상공업의 기본적 속성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⁵⁰⁾

VI. 대중(常民)의 복종과 공공재

조선왕조 엘리트의 근본적 존재조건은 대중에 대한 상대적으로 약한 교섭력이었다. 양반은 생활에 필요한 재화를 대중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대중들과 동일한 촌락에 거주하였고 무엇보다 사적인 군사력을 보유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⁵¹⁾

조선왕조 초기에는 武班의 관직을 갖지 못한 양반들은 일반 양민과 같이 軍役의 부담을 지고 있었지만 대체로 16세기 이후 군역에서 이탈하는 경향이 일반적이 되었다. 조선왕조의 군사제도는 본래 唐의 府兵制를 따라 군복무에 필요한 경비를 자신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경제력과 노동력을 보유한 家戶만이 군역을 부담할 수 있었다. 토지 3-4결(약 3만평)과 성인 노동력 3-4명 정도를 구비한 “중소 農庄主 이상의 경제력을 구비한 계층”이었다(김성우, 2001b, 105). 이는 대체로 양반에 해당하는 계층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⁵²⁾ 이들의 군역 부담에 대한 보상으로서 국가가 지급한 관직 진출권(仕宦權)은 16세기에 접어들면서 폐쇄되어 갔다. 軍戶를 뒷받침하는 奉足, 保人들도 소멸되고 군사기관의 수탈이 심화됨에 따라서 이들의 군역에 대한 이탈 경향이 극심하게 되었다(김성우, 2001b). 조선후기에 이르면 군역은 ‘良役’이 되어 일반 양민이 부담하는 부세가 되었으며 군역 면제가 양반신분을 증명하는 지표가 되기에 이르렀다.⁵³⁾

50) 이러한 상업의 성격에 대한 인식은 이현창 편(2010)에 수록된 연구들에 일관된 것이다.

51) 조선시대의 군사제도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다. 우선 육군사관학교 한국군사연구실(1968, 1977)을 참조.

52) 김성우(2001b, 105)는 이들을 “상층 양민”이라고 하였지만 이하의 인용과 같이 사실상 양반에 해당하는 계층이었다. “이들은 농장주라는 공통의 경제적 기반을 배경으로 관학에서 유교적 소양을 쌓은 儒生, 사환권이 전제된 군역에 복무하는 軍士 요원, 그리고 지역 행정에 참여하는 品官과 같은 다양한 역할을 지역사회에서 수행하고 있었다.”(106).

53) 일례로 1850년에 진주 지역의 한 몰락 양반가는 “班戶는 역을 감면받고 常戶는 역을 지는 것

임진왜란 당시 의병 활동을 在地 士族이 주도하였음을 고려해야겠지만(김성우, 2001a), 국방과 치안에 대한 양반의 무임승차적 속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강화되었던 것이 조선왕조의 국방력의 약화와 대중에 대한 엘리트의 교섭력 약화를 초래하였다고 생각된다. 군사력을 갖지 못한 양반들은 동족의 班村을 형성하고 노비를 보유하고 '선물경제'에서 확인되는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었지만, 규모가 커진 대중의 반란에 대해서는 대응이 거의 불가능하였다. 대중도 반드시 집단행동이 용이한 것은 아니었지만, 전쟁이나 기근 등과 같은 위기 시에 반란을 일으킬 경우 양반들은 국가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존재 조건은 향촌 거주 양반들의 렌트추구 행위를 일정수준에서 제약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되며, 극단적인 경제적 이익의 추구나 과시적 소비를 억제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기근 상황에서 양반들이 소유 곡물을 지역민에게 분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도 경제적 위기가 정치적 위기까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동기가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⁵⁴⁾ 국가에 의한 진휼이나 환곡 등에 의한 재분배도 행해졌지만, 일반 대중과 함께 거주하는 재지 양반들의 역할도 기대되지 않을 수 없었다.⁵⁵⁾

교섭력이 미약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선왕조의 양반들이 신분상의 특권을 대중에게 양보하고 정치제도를 개방적인 것으로 개편하였던 것은 아니었다. 신분제도 및 정치제도의 변화에는 매우 보수적이었다. 양반의 부가 기본적으로 토지에 기초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에 크게 의존하는 상공업 등의 자본 소유에 비하여 상당한 사회적 무질서에도 견딜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에 의한 토지 재산의 파악은 다른 재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부담증가가 예상되는 정치제도의 변화를 거부하려는 유인이 강하였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⁵⁶⁾

양반의 정치적 보수성은 지배연합에 있어서 상공인의 배제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이 國典에 실려 있는 바이고 官政이 따르는 바입니다"라고 하여 군역부담의 부당함을 목사에 게 호소하였다(김준형, 2004, 203).

54) 조선왕조는 진휼사업을 公穀의 사용여부를 기준으로 公賑과 私賑으로 대별하였지만, 민간에서 개인이 시행하는 것도 私賑이라고 하였다. 민간차원의 진휼의 존재에 대해서는 富民들이 官에 진휼곡을 납부하는 사례나 私賑人和 富民願納人에 대한 포상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용식, 1995, 115-116).

55) 기근시의 자선 행위 외에도 재지 양반들은 농촌의 신용의 공급자로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김재호, 2001a).

56) 서울지역의 양반과 재지 양반의 부 구성 간에는 차이가 있었을 것이며 이것이 정치적 지향에 있어서도 일정한 차이를 가져오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있었다고 생각된다. 『經國大典』에 工商人을 과거에서 배제한다는 규정은 찾을 수 없지만, 실제로는 공상인은 ‘工商賤隸’라고 칭하여 천인·노비와 동류로 취급되었으며 법적 지위도 낮아서 관직진출권(入仕權)이 부인되었다(유승원, 1987, 401).⁵⁷⁾ 조선왕조는 초기부터 “務本抑末”, “利權在上”의 원리에 기초한 억상정책을 시행하였으며(박평식, 1999, 47-67), 후기에도 “利權在上”, “貨權在上”을 모토로 상업을 국가의 통제 하에 두고자 하였다(한상권, 2000). 대동법 시행 이후에도 貢人을 두었던 것처럼 시장의 직접적인 의존은 피하고자 하였으며,⁵⁸⁾ 국가재정이 곤란해지는 중에도 항상 민간에 대해 채권자의 입장에 서고자 하였다.⁵⁹⁾

박평식(1999, 349-367)은 조선초기의 抑末的(抑商的) 성격이 15세기 후반 내지 16세기부터는 상업의 발달과 함께 약화된다고 논하고 있지만, 자신의 주장과도 일관되지 않는 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새롭게 정계에 등장하는 사림과는 훈구파 비해서 더욱 농촌 중심적이며 따라서 억말적 경향이 더욱 강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16세기말엽 선조대에 척신정치가 일단락되고 사림파가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조선왕조의 억말적 성격은 강화된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한 이해일 것이다.⁶⁰⁾ 17세기 이후 防納을 폐지하고 대동법을 시행한 것은, 서울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관인 권력층과 상공인의 결합을 차단하고 상업을 국가통제 하에 재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동법 체제는 공인을 통해 시장과 간접적으로 접촉하고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쌀과 布木 등의 현물을 중심으로 한 재분배경제를 골격으로 하여 운영

57) 이러한 인식을 보여주는 기록으로는 “士出於農 工商不與焉”(『定宗實錄』 2년 1월 己丑), “古者四民之中 士農爵於朝 而工商不與焉者 以業賤也”(『成宗實錄』 3년 6월 己巳)를 볼 수 있다. 유승원(1987, 401)에서 재인용.

58) 박기주(2008)는 공인에 대한 경제학적인 이해를 시도하고 있음.

59) 이와 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일단 김재호(2008)를 참조.

60) “사림의 이러한 財富民散의 논리는 왕실·척리 등 중앙 권세가들의 상업독점과 식화행위가 전국을 대상으로 펼쳐지던 현실에서, 향촌사회에 구축한 그들의 지배기반을 유지하고 保守하려는 목적에서 전면에 내세우던 주장이었다. 다시 말해 중앙 권세가의 상업독점과 식화로 인해 그들의 재지기반인 농민과 농촌사회가 몰락·동요하는 상황을 개선함으로써, 국초 이래 수립해 왔던 지주·대농으로서 그들 士族 中心의 鄉村秩序, 나아가 國家體系の 안정을 모색하려는 목적에서 강조하는 논리였다. (중략) 결국 재지주로서 사림세력이 벌이던 국가나 중앙권세가의 財利追求에 대한 비판은, ‘利權在上’론에서 최종 최고의 이권을 장악하는 ‘上’으로서 국가의 이익독점과 이에 편승한 중앙 권세가의 脫法行爲에 대한 반발이었다. 그로 인해 왕조의 根幹이자 封建으로서 동일한 ‘上’인 자신들의 이권이 훼손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향촌기반이 붕괴됨에 대한 우려였다”(박평식, 1999, 340).

되는 것이었으며 화폐의 사용은 억제되고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사림과의 권력 장악과 대동법의 실시는 논리적으로 일관된 것이며,⁶¹⁾ 억상정책은 왕조 최후까지 유지되었던 것이다. 그 뚜렷한 증거는 정책의 결과로서 관직에서의 상공인 배제와 市塵 및 貢人의 자본 축적의 좌절이다. 貢市人의 자본축적의 좌절은 근본적으로 지배연합에 속한 엘리트들에게 이익이 흡수되거나 렌트추구 과정에서 낭비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지배연합에서의 상공인들의 배제와 함께 독자적인 상공인 조직을 국가 외부에 만들기 어려웠던 조선왕조의 중앙집권적 속성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19세기 이후 세도정치기에 서울 거주의 京華 벌벌의 정치권력의 독점과 이들의 상업적 이해와의 결탁을 지적할 수 있지만, 조선왕조는 갑오개혁(1894)으로 과거제도가 폐지되기 전까지 상공인에게 관직을 개방하지 않았으며, 국가재정의 곤란 속에서 상업자본을 수탈하고 있었다. 조선왕조의 억상정책은 소농사회의 틀 내에 士農工商의 사회적 분업을 고정시킴으로써⁶²⁾ 국가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상업자본의 축적이나 상인조직의 형성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었으며, 이로써 시장의 힘이 정치제도 변화의 동력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조선왕조의 정치·경제적 중심지였던 서울로 엘리트들이 관직을 매개로 하여 “회오리”처럼 상승하여 올라가게 되면(Henderson, 1968), 수도 서울의 도시적 특성으로 인해서 상업과 관계를 가지게 되고 이로부터 취득하는 렌트로 인해 엘리트의 富 구성이 변화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그러나 조선왕조의 지배연합은 수도에 거주하는 엘리트만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강한 농촌적 기반을 가진 엘리트들이 지방에 광범하게 포진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배연합의 성격이 상업적인 것으로 변화하는 것은 강한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되어 있었다. 특히 상업적 경제력에 기초하여 지배연합 내로 진입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방어적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훈구파와 사림파의 갈등, 사림파의 정권 장악, 방납의 폐지와 대동법의 실시, 상공인의 관직진출의 배제와 상업자본 축적의 좌절 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왕조는 상공업에 기반을 갖는 엘리트의 등장을 저지함으로써 전체 지배연합의 성격을 장기간 동질적으로, 농업적·농촌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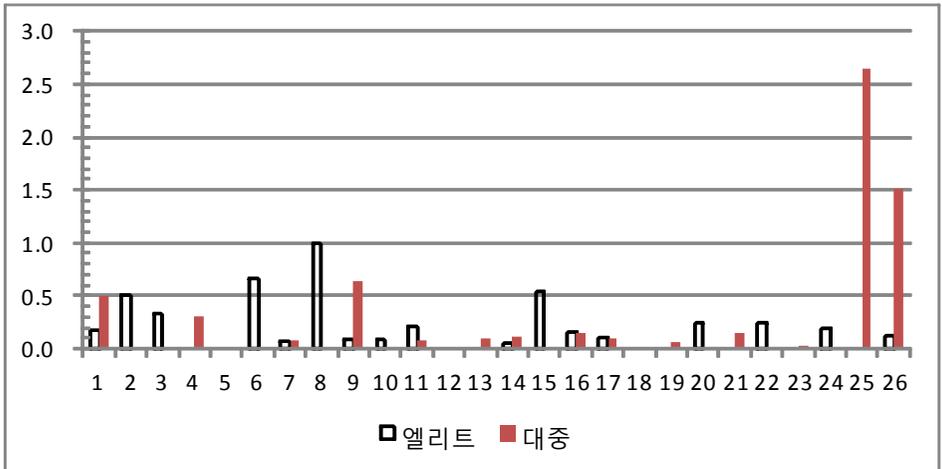
61) 대동법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에 관해서는 이정철(2010)을 참조.

62) 士農工商이라는 개념의 사상적 기원에 대해서는 植松忠博(1997)을 참조.

이러한 지배연합의 동질적 성격은 조선왕조 장기지속에 기여하였음이 틀림없다.

한편, 대다수 대중은 왜 자원에 대한 접근이 엘리트에 의해 제한된 ‘자연국가’인 조선왕조에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복종하였는가? 조선왕조는 <그림 2>에서 보듯이 왕조 전 기간에 걸쳐 반란이 희소하였다.

<그림 2> 조선왕조의 정치변란의 왕대별 연평균 발생건수



자료: 박종성(1995, 371)에서 작성.

주: 1. 태조, 2. 정종, 3. 태종, 4. 세종, 5. 문종, 6. 단종, 7. 세조, 8. 예종, 9. 성종, 10. 연산군, 11. 중종, 12. 인종, 13. 명종, 14. 선조, 15. 광해군, 16. 인조, 17. 효종, 18. 현종, 19. 숙종, 20. 경종, 21. 영조, 22. 정조, 23. 순조, 24. 헌종, 25. 철종, 26. 고종.

먼저 국가나 상위 신분에 대항하는 집단행동에 대해 강도 높은 처벌이 가해졌다. 앞에서 보았듯이 노비의 주인에 대한 일체의 경미한 반항도 가혹한 처벌의 대상이 되었으며, 모반행위에 대해서는 신분에 관계없이 가혹한 처벌이 연좌제에 의해 가해짐으로써 가문 전체를 파멸시켰다. “亂言”이나 “익명서”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집단행동을 위한 선동이나 조직을 곤란하게 만드는 요인이었다(조윤선, 2006).⁶³⁾ 더

63) “무릇 난폭한 말(亂言)을 하는 자는 왕에게 보고하여 推問하여 사실을 조사(推覈)하고, 杖1백, 流3천리에 처한다. 만일 윗사람을 범하는 것에 관여되어 정황이 아주 나쁜 자는 斬하고, 가산을 관에서 몰수(籍沒)한다. 무고하는 자는 反坐하며, 알고도 고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죄에 1등을 감한 벌에 처한다. 익명서는 비록 國事に 관계되는 것이더라도, 父子의 사이에서 조차 말을 옮기지 못하며, 만약 말을 옮기는 자나 여러 날 불태우지 아니한 자가 있으면 모두 律에 따라 논죄한다.”(『經國大典』刑典 推斷).

육이 반란의 성공으로 얻게 되는 이익이 대중 전체에 돌아간다는 점에서 반란은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반란의 실행에는 ‘무임승차’로 인한 ‘집단행동의 문제’(Olson, 1965)를 해결해야만 하였다. 이러한 난점이 있었지만 대중의 반란이 완전히 억제될 수는 없었는데, 왕조 초기부터 노비들의 “변란”이 관찰되며(박종성, 1995, 184-189), 이들은 “殺主契”, “劔契”를 조직하여 주인에게 대항하였다(정석중, 1983, 23-25). 그리고 후술하듯이 19세기에 들어오면 ‘민란’이 급증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조선왕조가 장기 지속하였던 주된 이유를 단순히 강제에 의해서 대중의 반란을 억제, 진압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대중의 자발적 협력이 없었다면 조세의 징수와 렌트 수취에 있어 막대한 거래비용이 발생하였겠지만, 조선왕조는 소규모의 군사력과 재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첫째 조선왕조의 법률이 국가와 엘리트의 지배를 뒷받침하는 기능만 수행하였던 것은 아니며 제3자적 기능을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조윤선, 2002). 또한 18세기 이후에는 국왕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는 제도(上言, 擊鐸)도 운용되고 있었다(한상권, 1996). 이러한 제3자적 기능과 함께 복종에 대한 보상이 주어진다면, 특히 국가가 생존에 필수적인 공공재를 공급한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대중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대중의 ‘준 자발적 복종’(Levi, 1988)을 이끌어내기 용이할 것이다.

공공재를 생각하면 먼저 국방과 치안을 떠올리게 되지만, 조선왕조는 농업생산에 필수적인 수리시설의 공급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⁶⁴⁾ 특히 방대한 곡물을 축적하여 환곡으로 운영하였다는 점에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⁶⁵⁾ 소비에 있어 경합적이라는 점에서 곡물 저장과 분배 자체를 공공재 공급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지만, 집단행동의 문제를 국가가 해결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공재의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대중들이 흉년에 대비하여 각자 곡물을 저장할 수 있고, 촌락에서 자치적으로 곡물을 수집하여 공동기금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지만(社倉), 위기 시에 재산권의 안전을 보장받기 어려우며, 공동기금의 경우는 관리에 따른 거래비용이 크다는 문제가 있다.⁶⁶⁾

64) 조선시대의 수리시설에 관해서는 최원규(1992), 염정섭(2002), 김상태(2005)를 참고할 것.

65) 환곡제도에 관해서는 문용식(2000), 송찬섭(2002), 조세열(1998)을 참조할 것.

66) 朱子가 사창 운영의 모델이었기 때문에 조선왕조 내내 사창의 설립이 시도되었지만 사실상 실패하였던 것은 조선왕조의 농촌 질서가 집단행동의 문제와 거래비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이다.

시장에 따른 곡물 이동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균형 가격에서의 공급량이 대중의 생존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리라는 보장은 없다(Sen, 1981). 또한 조선왕조와 같이 국도가 상대적으로 좁아 생산 충격에 의한 가격 변동이 전국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조건에서는 시장에 의한 곡물 이동만으로는 지역적인 곡물 부족과 가격 상승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박이택, 2010). 이러한 점에서 조선왕조의 국가에 의한 곡물 저장과 운송 및 분배는 농민의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常平倉 제도를 이용하여 주로 곡물 가격을 조절하였던 淸代의 중국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1인당 곡물저장량에 있어서도 조선이 훨씬 많았다(박이택, 2005; 이영훈·박이택, 2007).⁶⁷⁾

기근에 대비한 곡물 저장 자체는 특별한 것이 아니지만 조선왕조는 평시에도 매년 농민에게 곡물을 지급하고 환수하는 것을 지속하였다(환곡).⁶⁸⁾ 조선왕조의 국가에 의한 곡물저장의 규모는 1,000만 석에 달하였던 18세기 후반에 가장 컸지만, 세종 30년(1448)의 의창곡의 규모도 241만 석에 달하였다(김민수, 1997, 36).⁶⁹⁾ 왕조 초기의 義倉의 분급 규정에는 매년 농사철에 궁민에게 양식과 종자를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었으며 하층의 농민들은 평시에도 농업에 필요한 생산요소, 즉 종자와 식량(그리고 때때로 農牛까지도)을 국가로부터 지급받았다. 특히 종자의 항상적 분급은 고려의 의창곡 운영과도 구별되는 조선왕조 환곡운영의 특징이었다.⁷⁰⁾ 조선왕조가 환곡제도를 통해서 농민에게 종자와 농량까지 공급하였던 것은 소농의 재생산에 국가의 지지가 필요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중앙집권 국가로서 지방 유력자의 등장을 용인하지 않았던 조선왕조에게 농민경영의 안정성 확보는 자신에게 부과한

67) 조선의 환곡 총량은 1797년에 967만 석(쌀 환산 672만 석)이었는데, 중국은 1790년대 중반에 상평창, 의창, 사창의 저장곡을 합하여 쌀 환석 2,250만 석의 규모였다. 중국의 인구가 월등히 많았기 때문에 조선의 1인당 곡물저장량은 중국의 5배에 달하였다(박이택, 2005, 54-55). 중국의 상평창 제도를 비롯한 기근대책에 관해서는 Li(2007)를 참조.

68) 이하의 서술은 김재호(2001b)를 참조.

69) 이밖에 조선왕조 초기의 의창과 진휼제도에 관해서는 김훈식(1993), 菅野修一(1994, 2001), 간노(2003), 김순남(2007)을 참조.

70) “옛 제왕은 단지 빈민을 진휼할 뿐이지만 우리나라는 백성에게 거두고 방출하여 생업에 밀친이 되게 한다(古之帝王 但賑貧民 而我國則民收糶而資生業).”(『세종실록』 21년 2월 丙辰). “백성들은 빈부를 막론하고 봄에 밭 갈고 여름의 김 매기할 때마다 모두 義倉의 곡물에 의지한다(民無貧富 每於春耕夏耘之時 皆全仰義倉).”(『세종실록』 23년 6월 戊寅). 김재호(2001b, 62-63)를 참조할 것.

의무이자 정당성의 근거였다.

조선왕조가 대중으로부터 부세를 수취할 때 왕토사상은 대중의 자발적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하였겠지만, 이것만으로 대중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는 없으며, 대중의 협력(준 자발적 복종)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은 생존의 위기에 이루어지는 국가에 의한 저장 곡물의 분배였다고 생각된다. 환곡제도는 운영상의 수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지만(김재호, 2001b; 박이택, 2009), 생존의 위기에 몰린 대중이 집단행동을 감행함으로써 심각한 정치적 위기가 조성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완화하는 기능은 충분히 수행하였다고 판단된다. 17세기 현종 대 이후의 극심한 기근에도 불구하고(김덕진, 2008), 민란이 좀처럼 관찰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진휼대책의 효과를 제외하고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박용국(2010)이 보여주듯이 17세기에 지리산 권역을 중심으로 기근이 발생하여 유민과 도적이 큰 문제가 되었을 때 정부의 대책은 기본적으로 곡물을 공급하는 진휼정책이었다.

더욱이 ‘국가적 재분배경제’는 엘리트가 수취하는 렌트의 기반이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수 대중의 생계의 원천이기도 하였다. 중앙의 中人 및 지방의 향리 그리고 적지 않은 수의 대중이 국가재정을 중심으로 한 재분배 경제에 소득의 원천을 두고 있었다. 국가재정의 운영과 관련된 노동력의 제공은 본래 役으로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실제로는 소득을 취할 수 있는 관행이 성립되어 있었다(人情이나 役價 등). 이를 국법에 없는 비정규적 지출이라고 하여 삭감한다면, 향리를 비롯하여 적지 않은 수의 대중의 생존 기반도 동시에 위협받게 되었을 것이다.⁷¹⁾ 재정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화폐재정이 필수적이지만 현물재정의 틀을 유지하였던 이유 중에 하나도 조운 및 운반과 관련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달려 있다는 점이 있었을 것이다. 이는 엘리트뿐만 아니라 대중까지도 조선왕조의 재분배경제의 유지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점에서 조선왕조의 재정제도는 강한 ‘경로의존성’을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의 〈그림 2〉에서 보았듯이 19세기에 들어와 민란이 전례 없이 급증한 원인은 무엇인가? 1812년(양력)에 평안도 청천강 이북 지역에서 홍경래난이 일어난 것을

71) 이현창(2010, 442)에 의하면 18세기 후반에 공식적인 국가의 총 수취는 쌀로 환산하여 400만석(국내총생산의 5%)이었으며 그 중에 중앙 수취가 150만석, 지방 세입은 250만 석으로 추정된다. 이외에 “비공식적인 부담 내지 구조화된 중간수탈”은 150만석 규모로서 공식·비공식 수취를 모두 합한 국가 총 수취는 국내총생산의 5-10% 정도였다고 추정된다.

필두로 하여, 1862년의 진주민란 이후 19세기 후반기는 “민란의 시대”라고 할 만큼 전례 없는 정치적 불안이 계속되었다.⁷²⁾ 최근 배항섭(2008)은 많은 연구가 지주-소작인 간의 계급갈등에서 민란의 원인을 찾고자 하였지만 민란 과정에서 지주체에 반대한 사례는 찾을 수 없었으며, 향촌에 대한 국가의 지배가 강화됨으로써 재지 양반의 완충작용이 약화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었다고 주장하였다. 고석규(1998)가 보여주었듯이 18세기 후반에 “수령-吏鄕 지배구조”가 자리 잡게 됨으로써 향촌의 士族 지배체제가 붕괴됨으로 인해 대중에 대한 수탈이 심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가에 의한 직접적 지배의 강화가 농민의 부담을 가중시킨 것이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조선왕조의 장기지속을 가능하게 하였던 조건에 대한 이해 위에 조선왕조 정치체제의 장기변동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여기서는 그 윤곽만을 가설적으로 그려보는 것으로 그친다. 요점은 지나친 렌트추구 행위는 국가재정을 악화시킴으로써 공공재 공급을 감소시키는 한편, 생산적 투자를 곤란하게 하여 인구증가에 의한 수확체감을 상쇄시킬 수 있는 생산성의 증대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점이다. 플러스(+) 효과로부터 시작하면, 지배연합의 형성으로 인해 사회질서가 회복됨으로써 거래비용의 저하로 교역이 증대되어 시장이 확대되고 사회적 분업이 진전됨으로써 경제가 성장한다(“스미드적 성장”).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재정수입이 증가함으로써 대중에 대한 공공재가 적절한 수준에서 공급되어 ‘준 자발적 복종’을 이끌어내기 용이하게 된다. 이는 통치비용을 감소시키고 사회를 안정시킬 것이다. 엘리트에 대한 렌트 분배는, 모두 낭비되지 않고 농업기술의 발전에 있어서 양반 사대부가 수행한 역할에서 보듯이(이태진, 1986, 1989, 2002), “유용한 지식”(Mokyr, 2002, 1-27)의 축적과 확산에 의하여 생산성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다.⁷³⁾

그러나 생활수준의 상승으로 인해 인구가 일정수준을 넘어 증가하면 획기적인 기술진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수확체감을 피하기 어려우며,⁷⁴⁾ 결국에는 생활수준

72) 조선시대의 정치적 변란과 민란에 관한 개관은 고성훈 외(2000)를 참조.

73) Mokyr(2002)는 “유용한 지식”(useful knowledge)을 (1)“what”에 관한, 자연현상과 규칙성에 대한 “명제적 지식”(propositional knowledge = Ω -knowledge)과 (2)“how”에 대한 것으로서 기술과 관련된 “처방적 지식”(prescriptive knowledge = λ -knowledge)의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조선시대 엘리트의 역할은 중국의 선진 농법 등과 같은 “처방적 지식”(λ -knowledge)을 전파하는 역할이 컸다고 생각된다.

이 하락하게 된다.⁷⁵⁾ 더욱이 조선왕조는 국제무역을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있는 사실상의 폐쇄경제였다.⁷⁶⁾ 이러한 조건에서 상공업자들을 지배연합에서 배제하고 억상정책을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공업 부문에서 기술진보의 유인은 매우 약했다. 이양법의 보급 등 기술진보가 관찰되지만 조선왕조의 기술발전 속도는 인구증가로 인한 수확체감을 끝까지 저지하기는 어려운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사회적 생산성의 전반적인 하락 가운데 산림의 황폐와 토양의 유실, 그리고 관개시설의 관리부실 등이 겹쳐서 나타난 것이 “19세기 위기”였다고 이해된다(이영훈 편, 2004).⁷⁷⁾

또한 인구증가와 과거합격자의 증가로 인해 지배연합의 진입경쟁이 격심해지면, 렌트 추구로 인해 자원이 낭비되는 경향이 강해짐으로써 생산적 투자가 저해되고 “유용한 지식”의 생산은 감소되어 수확체감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많은 자원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지배연합에서의 탈락, 지위저하 또는 진입 좌절로 인해 렌트 분배가 어렵게 된 자들이 축적되면 왕조 전복이나 적어도 현상 타파를 시도하는 자들이 출현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Kim(2007a)은 흥경태난의 주요 원인을 지역차별과 함께 “한계적 엘리트”(marginalized elite)의 존재에서 찾았으며,⁷⁸⁾

74) 조선후기의 인구추세에 관해서는 아직 정설이 없는 상황이나 대체로 임진왜란 이후 인구가 급속히 증가함으로써 시간이 흐를수록 18세기 이후 인구 압력이 가중되었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다. 다만 19세기에 인구가 감소, 정체, 증가였는지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다. 조선후기의 인구에 관한 연구의 현황에 대해서는 이기순(2006)을 참조. 조선후기 인구압력에 관해서는 우대형(2003)을 참조. 국가가 파악하고 있는 호구수의 추이는 19세기 초에 격감한 후에 정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한 인구 추정은 여기서 크게 벗어나기는 어렵다. 박희진·차명수(2003)는 왕족과 양반가문의 2개파의 족보를 이용하여 1700년부터 19세기 초까지 증가, 이후 19세기말까지는 정체, 이후 1938년까지 다시 증가하는 추세였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최근 차명수(2009b)는 왕족과 양반가문의 6개파의 족보를 자료로 이용하여 18-19세기에 연평균 0.62%의 속도로 인구가 증가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75) 박기주(2005)에 의하면, 18세기이후 19세기에 걸쳐 토지생산성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지만, 18세기는 실질임금이 완만하게 상승하고 생활조건이 비교적 안정적인 시기였는데 반하여 19세기에는 실질임금과 토지생산성이 동시에 하락하는 시기였고 산림이 황폐하여 생활조건이 악화되는 시기였다.

76) 이현창(2004b, 114-115)에 의하면, 개항 전후 무역의존도는 1.7% 전후에 불과하여 세계적으로도 매우 낮은 수준이었는데, 사무역을 억제하려는 지배층의 동기 및 조공제도의 규제가 무역의 성장을 제약하였기 때문이었다.

77) 이우연(2010b)은 소유권의 문제로부터 조선후기 산림황폐와 농업생산성 하락을 논하고 있다.

78) Kim(2007a, 87-88)은 어느 단일 원인으로 반란의 원인을 설명하는 것을 비판하고 복합적인 이해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지역의 조세 유치분을 중앙으로 통합하는 것, 鄉案이나 公債의 운영에 대한 중앙정부의 개입, 상인들의 신분상승의 좌절, 자연재해에 대한 정부의 무

김용섭(1996)은 1862년의 진주민란의 주모자가 “몰락양반의 상징적 존재”, “兩班士族·鄕村士夫의 일원”, “중앙정계에 진출하고 있는 양반관료”와 같은 부류였다고 지적하였다.

엘리트에 대한 렌트 분배에 곤란이 발생하면 엘리트의 분열로 인해 사회질서는 더욱 불안정하게 될 것이며, 재정곤란으로 인해 공공재 공급이 감소하면, 79) 대중의 ‘준 자발적 복종’을 유인하기 어렵게 된다. 특히 환곡제도에 의해서 운용되는 곡물저장의 원천은 궁극적으로 재정잉여(정부저축)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에서의 공식적 비공식적 재정지출의 증가는 곡물저장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환곡을 비롯한 공공재 공급의 감소는 국가가 대중의 집단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을 상실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생각된다. 19세기에 들어와 특히 1840년대 이후 환곡의 지역 간 이동이 거의 중지되면서 본래의 역할을 상실하게 되는 것(문용식, 2000), 그리고 재정운영에서 부패문제가 심각해지고 수탈적이 되는 것은 이러한 전체 구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1862년에 일어난 민란의 주요한 원인이 환곡 운영의 폐단이었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환곡이 대중들에 대한 ‘준 자발적 복종’을 이끌어내기 위한 주요한 수단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80) 렌트추구에 의한 낭비가 인구증가로 인한 수확체감과 겹치는 가운데, 지배연합 내 렌트 분배에 문제가 발생하고 대중에 대한 공공재 공급이 기능부전 상태에 빠짐으로써, 대중의 자발적 복종을 이끌 유인이 사라지게 됨에 따라, 조선왕조는 진정한 위기를 맞이하였던 것이다. 81)

능력, 양반들의 중앙진출에서의 지역적 차별 등이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반란이 실행에 옮겨지기까지는 실로 많은 복합적인 조건이 구체적인 국면에서 합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근본적인 인과관계이다.

79) 조선왕조 재정의 대강의 추세는 다음과 같다. 건국 이후 15세기는 재정상황이 호전되어 안정된 시기였으며, 16세기는 연산군(1476-1506)의 폭정을 계기로 재정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임진왜란(1592-1598), 정묘호란(1627), 병자호란(1636-1637)은 이미 악화된 재정상태를 최악의 상황에 빠뜨렸다. 17세기 중반 이후 18세기까지는 동아시아 국제관계가 안정을 찾고 대동법(1608년 시작-1708년 완성)의 시행으로 인해서 대체로 재정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시기였다. 19세기 이후는 재정이 악화되기 시작하여 개항 이후 심화되었다. 김성우(2001a, 51-93)는 16세기를 “재정운영의 위기”로 이해하고 있으며 박석운·박석인(1988)은 1820년대부터 재정궁핍이 심화되었다고 보고 있다.

80) 1962년의 민란과 환곡운영과의 관련에 관해서는 송찬섭(2002, 77-172)의 제2장 “還政에 대한 읍민의 저항”이 상세하다. 또한 1862년의 민란에 관한 최근의 연구로 Kim(2007b)을 참조.

조선왕조의 장기지속을, 관점을 바꾸어 이상과 같은 장기변동의 관점에서 돌아보면, 무엇보다 조선왕조의 정치·경제체제가 이와 같은 순환을 지연시키고 회복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렌트 추구 행위에 따른 마이너스(-)의 효과를 장기간 적정한 수준에서 제어할 수 있었음을 말해주는 데, 앞에서 고찰하였던 조선왕조 지배연합의 동질성과 농촌적 정체성 유지에 관한 논의는 렌트 추구의 마이너스(-) 효과를 제어하기 위한 조선왕조 고유의 방법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임진왜란에 의한 충격을 조선왕조 장기변동 속에 어떻게 위치지울 수 있는가 하는 큰 문제가 남아 있다. 이 연구의 분석틀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Olson (1982)이 지적하고 있듯이 전쟁의 충격은 경제의 효율성을 잠식하는 ‘특수이익집단’을 해체하고 그 성장을 저지함으로써 렌트추구를 감소시켰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또한 급격한 인구감소는 수확체감의 압력을 감소시켰을 것이다.⁸²⁾

V. 비교사적 검토

서두에서 살펴보았듯이 Wong (1997)은 “경제적 변화”의 측면에서는 18세기까지 중국과 유럽이 ‘스미드적 성장’에 의해서 동일한 수준에 도달하였지만, 그 이후 경로가 크게 달라졌던 이유를 공업화에 적합한 유럽의 정치제도, 특히 ‘국가형성’(state formation)의 특질에서 찾았다. 유럽의 국가는 외부의 경쟁자와 내부의 엘리트 그룹과 협상을 해야 하였으며, 신민에 대해서 ‘책임’(commitments)을 지지 않았다. 엘리트의 요구가 자유와 대의제의 이데올로기와 제도로 일반화되어 다수 대중들이 공유하게 됨으로써, 국가권력의 확대는 국가 영역의 시민사회로부터의 명확

81) 최근의 조선후기 경제동향에 관해서는 Jun et al. (2008, 2009)과 Cha (2009) 간의 논쟁을 참조할 것. 그러나 논쟁 양편 모두 전근대사회의 제도적 특성, 특히 국가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다. 본 연구의 지배연합의 렌트추구 행위와 국가의 공공재 공급과 관련된 제도적 요인을 통합시킴으로써 조선왕조의 경제동향에 관한 좀 더 종합적인 모델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82) 이와 함께 ‘경로의존성’에 의해서 조선왕조 정치체제가 경제적 성과의 저하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존속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제도가 경로의존성을 갖게 되는 핵심적 요인이 사회구성원(엘리트와 대중)이 제도의 존속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이 연구는 어떤 의미에서는 조선왕조 정치체제의 경로의존성의 경제적 요인을 분석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한 분리를 수반하게 되었다. 후기 제국의 중국에서도 외부의 침입이 중요한 도전이었지만, 중국은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 즉 조공체제를 기획하였으며, 국내적으로는 국가(정부)가 일상적 사회질서의 구축과 유지에 중심적인 역할을 떠맡았다. 국가의 이러한 역할의 수행에 있어서 관료제적 위계제와 관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다. 유럽과 달리 중국의 관원과 엘리트는 사회질서를 위한 물질적·도덕적 제도를 만들고 유지하는 능력과 의욕을 보임으로써 대중에 대해 ‘책임’을 졌으며,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사회는 이들에게 사회적 통제를 위한 수단을 제공하였다(280-281). 유럽인들은 경쟁과 성장을 추구하였지만, 중국의 국가는 “정태적 효율성”(static efficiency)을 목표로 하였다(280).

이러한 중국의 정치제도에 대한 설명은 대외관계를 제외하면 조선왕조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즉 사회질서의 유지에 있어서 국가와 관료, 엘리트의 중심적 역할과 대중에 대한 책임의식, 그리고 국가로부터 독립된 자율적인 권력의 부재와 시민사회의 미발달이 그것이다. 이러한 중국 유형의 국가가, 항상 대내외적 경쟁자에 둘러싸여 있으며 자율적인 권력을 보유하고 있는 엘리트와 대중이 존재하였던 전근대 유럽 유형의 국가에 비해, 강한 안정성을 지니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서두에서 전해중(1976)이 비교하였듯이 한국의 왕조는 중국의 왕조보다 월등히 장기간 존속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강한 안정성을 지니고 있었다. 같은 유형에 속하지만 한국의 왕조는 중국과도 구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83) 84)}

먼저 중국은 영토가 방대하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엘리트의 이질성이 조선의 경우보다 커질 가능성이 크다.⁸⁵⁾ 명청대 중국의 인구는 명초 6천만 명에서 청말 3억

83) 韓中日 동아시아 삼국의 비교사적 연구가 집성된 것만을 우선 들어보면, 동양사학회 편(1993), 역사학회 편(1998), 조선시대사학회 편(1999), 동양사학회 편(2000), 한국고문서학회 편(2006), 나카무라·박섭 편저(2007)가 있다.

84) 조선왕조의 비교사적 특질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역대 왕조와의 비교도 필요하지만 조선왕조가 한국사에 있어서 큰 흐름인 중앙집권적 국가의 성장과 소농민의 성장에 있어서 정점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그친다. 이에 대한 고찰은 추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한국사의 시대구분에 관해서는 차하순 외(1995), 한국고대사연구회 편(1995), 이현창(2011, 23-40)을 참고.

85) 참고로 Alesina and Spolaore(2003)에 의하면 국가의 최적 규모는 규모의 경제와 불경제의 균형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국가 규모가 커지면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지만, 동시에 규모의 불경제가 발생하게 될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국가내 집단 간의 이질성이 커지기 때문이

으로 증가하였으며(기시모토·미야지마, 2003, 99), 조선은 초기 500만 명에서 조선후기 1,600만 정도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므로,⁸⁶⁾ 조선의 인구수는 대략적으로 동시기 중국의 10분의 1에서 20분의 1 정도의 규모였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인구가 월등히 많았을 뿐만 아니라 인구증가의 속도가 빨랐음을 알 수 있는데,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중국의 지배연합의 동질성 유지를 조선에 비해서 어렵게 만들었을 것이다. 더욱이 신분제가 미약하였고 과거제가 개방적이었던 중국에서는 조선왕조와 달리 상공인 계층의 과거 응시가 가능하였는데 이는 지배연합의 이질성을 심화시켰을 것이다.

지배연합에 진입하는 결정적인 관문이었던 중국의 殿試와 조선의 文科합격자를 비교하면 조선의 경우 문과합격자가 1만 4천여 명, 중국은 명청대 殿試합격자가 5만 1천여 명으로 인구에 비해서 조선의 경우에 합격자가 더 많았다. 이로 인해서 과거 합격자의 관직 경쟁은 조선 편이 더 격심하였으며, 과거 합격자가 소수의 동족집단(姓貫)에 집중되는 경향도 중국에 비해 훨씬 심하였다(기시모토·미야지마, 2003, 96-99). 이러한 점은 조선의 경우 관직에서 소외된 엘리트를 발생시키고 지배계급 내의 경쟁과 분열을 심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조선과 명청대 중국은 중앙집권적인 군주제의 국가이며, 과거에 의해서 선발된 관료제를 통해 통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조선의 국왕은 중국의 황제와 같은 전체적인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였으며 권력 행사를 관료에 의해 크게 제약받고 있었다(신채식, 1993; 이태진, 1993; 이성무, 1999). 중국의 황제는 종교적 상징성이 훨씬 더 강하였을 뿐만 아니라, 권력 행사에 있어서 관료제도뿐만 아니라 환관 제도를 구사할 수 있었다는 점이 권력의 전제성과 자율성을 강화시켰다(이성무, 1999). Olson(1982)의 논리에 따르면 강력한 권력은, 특수이익집단의 증대를 저지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황제의 강력한 권력은 지배 엘리트의 분파 형성을 저지하는 작용을 하였을 것이며, 상대적으로 약한 조선 왕조의 왕권은 지배 엘리트의 분파 형성을 제어하기 어려웠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지배연합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 조선왕조는 중국에 비하면 규모가 작았다는 점에서 장기지속에 유리하였을 것이다.

86) Maddison(2007, 116)에 의하면, 중국의 인구는 1500년경 1억에서 1820년경 3억 8천만으로 증가하였다. 조선의 인구는 권태환·신용하(1977)에 따르면, 1392년 5,549만 명, 1522년 1,062만 명, 1822년 1,622만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정제도와 관련한 렌트 획득에 있어서 중국과 조선의 엘리트들이 국가를 지지하는 유인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양국이 동일하지만, 어느 편이 국가에 더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시장경제, 상업이 더 발달된 중국의 경우에 국가 외부의 조직으로부터 렌트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더 컸을 것이다. 양국의 엘리트는 모두 지주제로부터 수익을 얻고 있었다는 점에서 국가재정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입원천을 가지고 있었지만, 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던 중국의 경우보다, 농촌에 거주하였던 조선의 양반의 경우에 지방재정과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의존의 정도가 더 컸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이러한 점은 조선의 양반이 국가에 협력하는 쪽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조선왕조의 양반들이 보다 당파적이고 경쟁적이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양반으로서의 신분적인 정체성과 결속력은 조선의 경우에 더 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노비제도의 존속으로 나타나는 신분제도가 조선왕조의 경우에 강고하였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미야지마, 2003). 또한 이데올로기의 면에서는 중국은 양명학과 고증학으로 성리학 외의 유학의 발전이 보이지만, 조선의 경우에 주자학 특히 성리학으로 단일화되었던 것도 지배연합의 안정성에 기여하였을 것이다. 지방의 양반 명부라고 할 수 있는 鄉案과 유사한 것이 중국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이질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중국의 宗族에 비하여 조선의 家門의 경우 혈연성이 강하다는 점(기시모토·미야지마, 2003)은, 조선의 이서층의 경우에도 드러나고 있는데(이훈상, 2000) 이러한 강한 혈연적 결속력을 갖는 엘리트들이 농촌을 기반으로 국가재정에 강한 이해관계를 지니고 '선물경제'를 통해서 수평적, 수직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이념적인 당파를 형성하여 결속되어 있던 것이다.

한편, 앞에서 내부적인 조세수입에 대한 의존이 컸다는 점에서 중국과 조선왕조의 대중에 대한 교섭력이 낮은 편이라고 하였는데, 문민 통치와 엘리트들의 비무장은 대중의 반란에 대해서 취약하게 만들었음이 틀림없을 것이다. 중국의 경우에 대중 반란이 더욱 빈번하고 대규모이며 왕조의 교체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았다.⁸⁷⁾ 대중들의 집단행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중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87) 참고로 Tong(1991)의 문헌조사에 따르면, 명대에 630번의 무장소요(armed disturbances)가 548개의 현(counties)에서 발생하였으며 1,095개의 현, 11개 성(province)으로 확산되었다고 한다(총 303,869 縣年(county-year) 중의 0.2%).

중요하다는 것은 중국이나 조선 모두 충분히 인식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영훈·박이택(2007)이 잘 보여주고 있듯이, 중국에 비하여 조선의 경우에 경제통합에 있어서 재정적 물류의 상대적 규모나 역할이 컸으며, 기근에 대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던 곡물저장(환곡)의 규모가 인구에 비해서 월등이 컸다. 중국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곡물의 공급보다는 상평창의 곡물을 시장에 방출하여 물가의 안정에 주력하였다. 대 농민정책에 관한 보다 상세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지만 조선왕조는 곡물저장이나 진휼 외에 수리시설의 공급이나 조세감면 등에 의해 농민경영의 재생산 유지에 적극적이었으며, 지방 양반 엘리트의 역할도 컸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국가와 엘리트들의 농민 재생산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은 대중의 집단행동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효과를 발휘하였을 것이다.

집단행동은 구성원이 많고 이질적일수록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 중국의 경우에도 빈번하게 대규모의 집단행동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집단행동의 난점을 상쇄할 수 있는 요인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Tong(1991)의 명대 반란의 연구에 따르면 반란은 지역적으로 중앙의 권력이 미치지 어렵고 도피가 용이한 산악지대에서, 시기적으로 재해가 발생한 시기에 일어나는 경향이 강하였는데, 중국의 광범한 지리적 조건이나 재해의 대규모성은 집단행동의 발생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중국의 경우에 집단행동의 모태가 될 수 있는 국가 외부의 조직이 더 많이 형성되었다고 생각된다. 상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중국의 경우에 상업조직이나 종교적 결사가 조직되는 경향이 더 컸다고 판단된다. 기시모토·미야지마(2003)에 의하면 중국은 결사의 원리가 氣로서, 혈연적인 관계를 넘어서 횡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매우 강하였다. 조선왕조의 경우에 대중들을 조직할 수 있는 원리가 뚜렷하게 없었던 것도 집단행동에 불리하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조선왕조가 鄉約등에 의해서 유교적인 생활규범이 대중에까지 확산되어 가고, 양반이 농촌에서 대중과 함께 거주함으로써 농민 대중의 불만을 엘리트가 포착하여 대처하거나 집단행동의 초기 단계에서 적발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생각된다. 이와 함께 노비제도가 존속하였던 것은 대중의 이질성을 강화시켜 집단행동을 곤란하게 만드는 쪽으로 효과를 발휘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훈상(2000)이 밝히고 있듯이 이서충이 준·관료적 성격을 띠고 있었던 중국과 달리, 조선왕조의 경우에 대부분 혈연성과 토착적인 기반이 매우 강하였기 때문에 대중의 국가와의 접촉에 완충작용을 하고 있었던 것도 국지적 범위를 넘는

대규모 집단행동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또한 배향섭(2010)이 보여주듯이 조선후기의 배타적 토지소유권이 비교사적으로 보아 중국보다도 발달되어 있었던 것도 대중이 토지에 대한 농민적 권리를 기초로 집단행동을 실행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생각된다.

VI. 맺음말

이 연구는 조선왕조(1392-1910)의 장기지속의 조건을 경제학적 기반에서 새롭게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국왕과 신하, 또는 중앙과 지방간의 세력균형에 주목하였을 뿐 조선왕조의 경제체제에 관한 이해가 피상적이었던 기존 연구의 한계를 타개하기 위하여 국가와 정치체제를 분석할 수 있는 경제학 연구로부터 이론적 자원을 획득하고자 하였다. 주로 North, Wallis, and Weingast(2009)의 제도와 국가, 특히 ‘자연국가’에 관한 연구, Olson(1965, 1982)의 집단행동과 특수이익집단에 관한 연구, Levi(1988)의 ‘준 자발적 복종’, Acemoglu and Robinson(2006)의 민주주의로의 이행에 관한 연구로부터 조선왕조의 장기지속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과 분석틀을 얻고자 하였다. 특히 국가의 구성원, 즉 엘리트와 대중으로 하여금 국가에 협력(충성과 복종)을 하게 만드는 유인에 주목하였다. 또한 초보적이지만 조선왕조와 동시기 명청대 중국과의 비교를 통해서 조선왕조의 특징을 좀 더 명확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왕조의 엘리트(양반)는 과거를 통해 관직을 획득함으로써 지배연합을 형성하여 각종 자원에 대한 접근제한으로부터 발생하는 렌트를 향유하였으며, 조선왕조는 엘리트에게 렌트를 보장함으로써 엘리트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과거제라는 매우 항구적인 제도를 근간으로 엘리트의 충원을 제도화하는 동시에 매우 경쟁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조선왕조의 지배연합은 안정성과 동시에 환경의 변화에 자신을 조정할 수 있는 신축성을 보유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엘리트들은 토지와 노비에 대한 재산권을 보장받기 위해 국가의 제3자적 집합력을 필요로 하였지만, ‘인격적인’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국가를 사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할 수 있었다. 렌트의 주된 원천은 조선왕조 경제체제의 재분배적 성격을 반영하여 국가재정과 이에 종속된 상업에 있었으며, 특히 지방재정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지배연합 내에 형성된 ‘선물경제’는 지배연합을 유지, 강화하는 효과를 발휘하였다. 상공업자를 배제하고

수도거주 엘리트의 도시화 경향을 억제함으로써 지배연합의 동질성과 농촌적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조선왕조의 장기지속에 기여하였다고 생각된다. 이는 과거 응시와 관직 진출에 상공인에 대한 제한이 없었으며, 紳士層이 도시에 거주하는 경향이 높았던 명청대 중국과 비교하여 조선왕조의 두드러진 특징이었다. 이로 인해 엘리트의 부 구성이 토지에 집중된 것도 정치제도의 변화에 대해 보수적으로 행동하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국가(국왕)에 대한 반란에 대해 연좌제를 통해 가문 전체를 파멸시키는 강력한 법률이 집행되었지만, 대중이 현물재정의 운영에 일정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대중에게 공공재를 공급함으로써 '준 자발적 복종'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이 조선왕조의 장기지속을 위하여 더욱 중요하였다. 조선왕조의 존재 조건은 대중에 대해 상대적으로 약한 교섭력이었기 때문이다. 국제무역이 극히 제한된 조건에서 국가의 수입이 거의 전적으로 대중의 농업 생산물에 의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왕조의 지배연합의 구성원인 엘리트, 양반은 사적인 군사력의 보유 없이 대부분 촌락에서 대중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중의 집단행동에 대해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 엘리트의 대중에 대한 과도한 수탈이나 과시적 소비는 억제될 수밖에 없었으며, 조선왕조가 농업생산에 필요한 종자와 식량과 같은 생산수단을 공급하고 기근 시에 최저한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환곡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도 이러한 조선왕조의 존재조건을 빼놓고는 이해될 수 없는 것이다. 환곡제도는 많은 운영상의 폐단을 낳았지만, 같은 유형에 속하는 명청대 중국과 대비하여도 조선왕조의 두드러진 특징이었으며, 생존 상의 위기가 정치적 위기로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였다는 점에서 조선왕조의 장기지속에 기여한 중요한 제도였다.

지배연합에 대한 안정적인 렌트 분배와 대중에 대한 공공재 공급은 조선왕조 장기지속의 핵심적 조건이었으며, 이 두 조건이 항상 양립 가능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양자의 적정한 균형이 매우 중요하였다. 지배연합에 대한 렌트를 사회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으로 생각하면 엘리트에 대한 렌트 분배는 경제적 성과에 대해 플러스(+)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렌트 추구로 인한 생산적 투자의 저해와 낭비는 장기적으로 생산성 하락을 초래하는 마이너스(-) 효과를 지니고 있다. 특히 인구증가로 인한 수확체감을 극복하지 못하여 생활수준이 악화되면 렌트분배를 둘러싼 경쟁은 더욱 격화되고 대중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19세기의 민

란은 엘리트의 렌트의 증가와 낭비로 인한 생산성 하락이 인구 압력에 의한 수확체감과 만나서 가중됨으로써 지배연합 내의 렌트 분배에 문제가 발생하는 한편, 대중에 대한 공공재 공급이 감소함으로써 복종에 대한 유인이 소멸되어 가는 조건에서 발생하였다고 생각된다.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연구는 조선왕조의 장기지속과 관련된 모든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 것은 아니며 한국 경제사 연구의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한정된 목적에서 시도된 것이다. 국제관계와 유교적 이데올로기 등에 관해서는 또 다른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조선왕조의 정치 경제 체제의 특징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명청대 중국과의 비교 외에 한국의 역대 왕조와의 비교도 행해져야 할 것이다. 이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분산적으로 이루어진 연구를 경제학적인 논리를 통해서 통합함으로써, 조선시대의 경제체제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의 한국 경제사 연구는 조선후기의 가격과 인구를 비롯한 거시적인 시계열의 확보와 분석에 입각한 수량경제사적 연구, 그리고 국가적 재분배론에 입각한 경제통합의 구조적 이해라는 두 갈래로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연구가 양자를 생산적으로 통합하고, 연구 대상을 확장해나가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 참고 문헌

1. 간노 수이치(菅野修一), “조선초기 賑恤穀 운송 문제: 朝鮮王朝의 國家的 再分配 기능에 대한 考察,” 『古文書研究』, 22, 2003, pp.193-222.
(Translated in English) Kanno, Shuichi, “A Study of the Transportation of the Dynastic Relief Grains for Peasants in the Early Period of the Yi Dynasty,” *Komoonseo Yongu*, No. 22, 2003, pp.193-222.
2. 姜光植, 『新儒學思想과 朝鮮朝 儒教政治文化』, 집문당, 2000.
(Translated in English) Kang, Kwangsik, *Korean Neo-Confucianism and Confucian Political Culture in Chosŏn Dynasty*, Seoul: Jipmundang, 2000.
3. 강제훈, “조선초기의 富商 許繼智의 신분과 권력배경,” 『한국사연구』, 119, 2002,

pp. 57-88.

(Translated in English) Kang, Jehoon, "The Status and Political Connections of Huh, Kye-ji, a Wealthy Merchant in Early Chosŏn," *Hankuksa Yongu*, No. 119, 2002, pp. 57-88.

4. 강진아, "16-19세기 중국경제와 세계체제 - '19세기 분기론'과 '중국중심론'," 『梨花史學研究』, 31, 2004, pp. 15-31.

(Translated in English) Kang, Jina, "Chinese Economy during the Early Modern Era and the World System: '19th Century Divergency Theory' and 'China-centered World System'," *Ewha Sahak Yongu*, No. 31, 2004, pp. 15-31.

5. _____, "동아시아로 다시 쓴 세계사 - 포머란츠와 캘리포니아학파," 『역사비평』, 82, 2008, pp. 235-265.

(Translated in English) Kang, Jina, "World History from an East-Asian Perspective: Kenneth Pomeranz and the California School," *Yuksa Bipyung*, No. 82, 2008, pp. 235-265.

6. 高東煥, 『朝鮮後期 서울商業發達史研究』, 지식산업사, 1998.

(Translated in English) Ko, Donghwan, *A Study on Commercial Development in Seoul of Late Chosŏn Dynasty*, Seoul: Jisiksanupsa, 1998.

7. _____, 『조선시대 서울도시사』, 태학사, 2007.

(Translated in English) Ko, Donghwan, *Historical Study of Seoul City in Korea*, Seoul: Taehaksa, 2007.

8. 고석규, 『19세기 조선의 향촌사회연구-지배와 저항의 구조』,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Translated in English) Ko, Sukgyu, *A Study of the Local Society in the 19th Chosŏn Dynasty in Korea*, Seoul: Seoul University Press, 1998.

9. 고성훈 외, 『민란의 시대』, 가람기획, 2000.

(Translated in English) Ko, Sunghoon, *The Era of People's Rebellion*, Seoul: Karamkihwek, 2000.

10. 權泰煥 · 愼鏞廈, "朝鮮王朝時代 人口推定에 關한 一試論," 『東亞文化』, 14, 1977, pp. 289-330.

(Translated in English) Kweon, Taehwan, Yonghwa Shin, "On Population Estimates of the Yi Dynasty, 1392-1910," *Donga Munhwa*, No. 14, 1977, pp. 289-330.

11. 기시모토 미오(岸本美緒) · 미야지마 히로시(宮嶋博史), 김현영 · 문순실 역, 『조선과 중국, 근세 오백년을 가다 - 일국사를 넘어선 동아시아 읽기』, 역사비평사, 2003.

(Translated in English) Kishimoto, M. and H. Miyajima, *Chosŏn and China: Early Modern 500 Years*, Seoul: Yuksa Bipyungsa, 2003.

12. 金德珍, 『朝鮮後期 地方財政과 雜役稅』, 국학자료원, 1999.

(Translated in English) Kim, Dukjin, *Local Finance and Miscellaneous Taxes in Late Chosŏn Dynasty*, Seoul: Kukhak Jaryowon, 1999.

13. _____, 『대기근 조선을 뒤덮다』, 푸른역사, 2008.

(Translated in English) Kim, Dukjin, *Great Famine in Late Chosŏn Dynasty*, Seoul: Purunyuksa, 2008.

14. 金 燉, 『朝鮮前期 君臣權力關係 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Translated in English) Kim, Don, *A Study of the Power-Relations between King and Subjects in Early Chosŏn Dynasty*, Seoul: Seoul University Press, 1997.
15. _____, 『조선중기 정치사 연구』, 국학자료원, 2009.
(Translated in English) Kim, Don, *A Study of the Politics in the Middle Period of Chosŏn Dynasty*, Seoul: Kukhak Jaryowon, 2009.
16. 金 玟洙, “朝鮮初期 賑恤制度 및 救荒政策에 關한 研究,” 『國史館論叢』, 76, 1997, pp. 23-70.
(Translated in English) Kim, Minsoo, “A Study of Famine Relief System and Policies in Early Chosŏn Dynasty,” *Kuksagwan Nonchong*, No. 76, 1997, pp. 23-70.
17. 金 범, 『사화와 반정의 시대: 성종·연산군·중종과 그 신하들』, 역사비평사, 2007.
(Translated in English) Kim, Bum, *Era of the Purge of Literati and Restoration*, Seoul: Yuksa Bipyungsa, 2007.
18. 金 상태, “조선 전기의 수리시설과 벼농사,” 『國史館論叢』, 106, 2005, pp. 329-371.
(Translated in English) Kim, Sangtae, “Water Supply System and Rice Farming in Early Chosŏn Dynasty,” *Kuksagwan Nonchong*, No. 106, 2005, pp. 329-371.
19. 金 성우, 『조선중기 국가와 사족』, 역사비평사, 2001a.
(Translated in English) Kim, Sungwoo, *The State and Noble Families in the Mid-Chosŏn Period*, Seoul: Yuksa Bipyungsa, 2001a.
20. _____, “16세기 중반 국가의 軍役 動員방식과 星州 士族層의 대응,” 『朝鮮時代史學報』, 18, 2001b, pp. 103-131.
(Translated in English) Kim, Sungwoo, “The Military Service Policy and Response of Seongju Local Elites in the Mid-16th Century Chosŏn Dynasty,” *Chosŏnsidae Sahakbo*, No. 18, 2001b, pp. 103-131.
21. _____, “조선후기의 신분제 - 해체구면 혹은 변화과정?,” 『역사와현실』, 48, 2003, pp. 3-29.
(Translated in English) Kim, Sungwoo, “The Stratification System of the Chosŏn Dynasty Period’s Latter Half: Is it a Phase of Dismantlement or a Process of Change?,” *Yuksawa Hyunsil*, No. 48, 2003, pp. 3-29.
22. 金 成俊, “朝鮮初期 贓吏子孫 禁錮法の 성립,” 『東方學志』, 44, 1984, pp. 93-133.
(Translated in English) Kim, Sungjun, “On the Law Against Appointing the Descendants of Corrupt Officials to the Government Post in the Early Chosŏn Dynasty,” *Donbanghakji*, No. 44, 1984, pp. 93-133.
23. 金 순남, “조선 초기 賑恤使臣의 파견과 賑恤廳의 설치,” 『朝鮮時代史學報』, 41, 2007, pp. 43-78.
(Translated in English) Kim, Sunnam, “The study on the Dispatch of Government Envoys for Relief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Chinhyulchong During the Early Chosŏn Dynesty,” *Chosŏnsidae Sahakbo*, No. 41, 2007, pp. 43-78.
24. 金 容晚, 『朝鮮時代 私奴婢研究』, 集文堂, 1997.
(Translated in English) Kim, Yongman, *A Study of Private Slaves in Chosŏn Period*, Seoul: Jipmoondang, 1997.

25. 金容燮, “哲宗朝 民亂發生과 그 指向: 晋州民亂 按覈文件의 分析,” 『東方學志』, 94, 1996, pp.49-109.
(Translated in English) Kim, Yongsup, “Peasant Movement of Chin-ju County and its Directional Intentions in 1862,” *Donbanghakji*, No. 94, 1996, pp.49-109.
26. 김재호, “農村社會의 信用과 契: 1853-1934,” 안병직 · 이영훈 편저, 『맛질의 농민들』, 일조각, 2001a, pp.300-331.
(Translated in English) Kim, Jae Ho, “Credit and Kye in Rural Region, 1853-1934,” Ahn, B. and Y. Rhee, eds., *Peasants in Matjil*, Seoul: Iljokak, 2001a, pp.300-331.
27. _____, “한국 전통사회의 기근과 그 대응: 1392-1910,” 『경제사학』, 30, 2001b, pp.47-85.
(Translated in English) Kim, Jae Ho, “Famines and Responses in Traditional Korea, 1392- 1910,” *Kyungje Sahak*, 2001b, pp.47-85.
28. _____, “상회사의 특권과 지대추구, 1876-1904,” 『경제사학』, 32, 2002, pp.65-94.
(Translated in English) Kim, Jae Ho, “The Privileges of Commercial Companies and Rent-Seeking in Korea, 1876-1904,” *Kyungje Sahak*, No.32, 2002, pp.65-94.
29. _____, “재정제도의 변화와 부패, 1392-1945,” 『경제사학』, 36, 2004, pp.41-81.
(Translated in English) Kim, Jae Ho, “Transition of Financial System and Corruption, 1392-1945,” *Kyungje Sahak*, No. 36, 2004, pp.41-81.
30. _____, “전통적 경제체제의 전환: 재분배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이대근 편, 『새로운 한국경제발전사』, 나남출판, 2005, pp.105-137.
(Translated in English) Kim, Jae Ho, “Transformation of Traditional Economic System: Redistribution to Market,” Lee, Dae Geun, ed., *New History of Korean Economic Development*, Seoul: Nanam Press, 2005, pp.105-137.
31. _____, “조선후기 중앙재정의 운영: 六典條例의 분석을 중심으로,” 『경제사학』, 43, 2007, pp.3-40.
(Translated in English) Kim, Jae Ho, “Fiscal Management of the Central Government in Late Chosŏn Korea,” *Kyungje Sahak*, No. 43, 2007, pp.3-40.
32. _____, “朝鮮後期 中央財政과 銅錢: 賦役實摺을 중심으로,” 『경제사학』, 44, 2008, pp.3-46.
(Translated in English) Kim, Jae Ho, “Taxa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Copper Coin in Late Chosŏn Korea,” *Kyungje Sahak*, No. 44, 2008, pp.3-46.
33. 김준형, “몰락 양반층의 군역침탈에 대한 대응양상 - 19세기 진주권 지역을 중심으로,” 『古文書研究』, 25, 2004, pp.199-223.
(Translated in English) Kim, Junhyung, “The Responses of the Declining Gentries(兩班) for the Compulsions into the Military Services,” *Komunseo Yongu*, No. 25, 2004, pp.199-223.
34. 金弼東, 『韓國社會組織史研究』, 일조각, 1992.
(Translated in English) Kim, Pildong, *A Historical Study of Korean Social Organizations*, Seoul: Iljokak, 1992.
35. 김훈식, 『朝鮮初期 義倉制度研究』, 서울대 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3.
(Translated in English) Kim, Hoonsik, *A Study of the Grain Storage in Early Chosŏn*

Dynasty,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3.

36. 나카무라 사토루(中村哲), “동북아시아 경제의 근세와 근대, 1600-1900,” 나카무라 사토루 · 박섭 편, 『근대 동아시아 경제의 역사적 구조』, 일조각, 2007, pp.9-57.
(Translated in English) Nakamura, Satoru, “North-East Asian Economy, 1600-1900,” in Nakamura, S. and S. Park, eds., *Historical Structure of Modern East Asian Economy*, Seoul: Iljokak, 2007.
37. 나카무라 사토루(中村哲) · 박 섭 편, 『근대 동아시아 경제의 역사적 구조』, 일조각, 2007.
(Translated in English) Nakamura, Satoru and Sub Park eds., *Historical Structure of Modern East Asian Economy*, Seoul: Iljokak, 2007.
38. 동양사학회 편, 『東亞史上의 王權』, 한울, 1993.
(Translated in English) Donyang Sahakhwe, ed., *Regal Power in History of East Asia*, Seoul: Hanwool, 1993.
39. _____, 『역사와 도시』,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Translated in English) Donyang Sahakhwe, ed, *History and City*, Seoul: Seoul University Press, 2000.
40. 柳永博, “端宗復位 謀議者들의 司法處理 - 端宗復位 謀議에 관한 研究(II),” 『震檀學報』, 78, 1994, pp.125-145.
(Translated in English) Ryu, Youngbak, “Judicial Punishment on the Plot of Restoration of King Danjing,” *Jindan Hakbo*, No. 78, 1994, pp.125-145.
41. 리보중(李伯重), 이화승 역, 『중국 경제사 연구의 새로운 모색』, 책세상, 2006.
(Translated in English) Lee, Bojong, *New Perspective of Chinese Economic History*, Seoul: Chaeksasang, 2006.
42. 文勇植, “18세기 후반 진흥사업과 賑資 확보책,” 『史叢』, 44, 1995, pp.105-145.
(Translated in English) Moon, Yongsik, “Relief work and its Programme for Fundraising in the Late 18th Century,” *Sachong*, No.44, 1995, pp.105-145.
43. _____, 『朝鮮後期 賑政과 還穀運營』, 경인문화사, 2000.
(Translated in English) Moon, Yongsik, *Relief Policies and Management of Grain Storage in Late Chosŏn Dynasty*, Seoul: Kyungin Munhwasa, 2000.
44. 미야지마 히로시(宮嶋博史), “조선시대의 신분, 신분제 개념에 대하여,” 『大東文化研究』, 42, 2003, pp.289-308.
(Translated in English) Miyajima, Hiroshi, “A study on the Concepts of a Person’s Status and the Status System in the Chosŏn Period,” *Daedonmunhwa Yongu*, No. 42, 2003, pp.289-308.
45. _____, “조선 후기 지배계층의 재생산 구조 - 비교 연구를 위한 초보적 탐구,” 『한국사학보』, 32, 2008, pp.211-243.
(Translated in English) Miyajima, Hiroshi, “Regeneration Structure of the Ruling Class in Late Chosŏn: A Preliminary Search for Comparative Studies,” *Hankuk Sahakbo*, 2008, pp.211-243.
46. 밀러, 오웬, “시전-국가 간 거래와 19세기 후반 조선의 경제위기: 綿絁塵을 중심으로,” 이현창 편, 『조선후기 재정과 시장 - 경제체제론의 접근』,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pp. 379-398.

(Translated in English) Miller, Owen, "Guild-government Trade and Chosŏn's Late Nineteenth Century Economic Crisis: A Case Study of the Myonjujon," Lee, Hun-Chang, ed. *State Finance and the Market in Late Chosŏn Korea*, Seoul: Seoul University Press, 2010, pp. 379-398.

47. 박기주, "조선 후기의 생활수준," 이대근 편, 『새로운 한국경제발달사』, 나남, 2005, pp. 69-104.

(Translated in English) Park, Kijoo, "Living Standard in Late Chosŏn Korea," Lee, Dae Geun, ed., *New History of Korean Economic Development*, Seoul: Nanam Press, 2005, pp. 69-104.

48. _____, "공인에 대한 경제제도적 이해," 『경제학연구』, 56(4), 2008 (이현창 편, 『조선 후기 제정과 시장 - 경제체제의 접근』,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pp. 245-276).

(Translated in English) Park, Kijoo, "The Economic-Institutional Understanding of the Kong-in in the Late Chosŏn Korea," *Kyung Je Hak Yon Gu*, Vol. 56, No. 4, 2008, pp. 245-276.

49. 朴秉濠, 『傳統的 法體系와 法意識』, 서울대학교출판부, 1972.

(Translated in English) Park, Byungho, *Law and Consciousness in Traditional Korea*, Seoul: Seoul University Press, 1972.

50. 박석운 · 박석인, "조선후기 財政의 變化時點에 관한 考察," 『東方學志』, 60, 1988, pp. 141-168.

(Translated in English) Park, Sukyoon and Sukin, Park, "On the Change Point of the Financial Standing of the Late Chosŏn Dynasty," *Dongbanghakji*, No. 60, 1988, pp. 141-168.

51. 박용국, "17세기 지리산권의 小氷期 現象과 사회 · 경제적 현상," 『嶺南學』, 17, 2010, pp. 113-148.

(Translated in English) Park, Yongguk, "Little Ice Age Phenomenon and Its Social and Economic Aspects Shown in Mt. Jiri Region in the 17th Century," *Youngnahak*, No. 17, 2010, pp. 113-148.

52. 박이택, "조선 후기의 경제체제," 이대근 편, 『새로운 한국경제발전사』, 2005, 나남, pp. 37-68.

(Translated in English) Park, Yitaek, "Economic System in Late Chosŏn Korea," Lee, Dae Geun, ed., *New History of Korean Economic Development*, Seoul: Nanam Press, 2005, pp. 37-68.

53. _____, "17, 18세기 환국에 대한 제도론적 접근 - 재량적 규제체제의 역할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32(3), 2009, pp. 133-165.

(Translated in English) Park, Yitaek, "An Institutional Approach to Hwangok During the Seventeenth and Eighteenth Centuries: Focusing on the Role of Discretionary Regulation System," *Jeonsinmunhwa Yongu*, Vol. 32, No. 3, 2009, pp. 133-165.

54. _____, "조선후기의 곡물저장과 교역," 『경제사학』, 46, 2010, pp. 29-59.

(Translated in English) Park, Yitaek, "Grain Storage and Trade in Late Dynastic Joseon," *Kyungje Sahak*, No. 46, 2010, pp. 29-59.

55. 朴鍾晟, 『王朝의 정치변동: 조선조의 국가존속과 농민의 정치적 저항』, 인간사랑, 1995.
(Translated in English) Park, Jongsung, *Political Fluctuation in Chosŏn Dynasty*, Seoul: Ingansarang, 1995.
56. 박평식, 『朝鮮前期商業史研究』, 역사비평사, 1999.
(Translated in English) Park, Pyungsik, *A History of Commercial Change in Early Chosŏn Dynasty*, Seoul: Yuksa Bipyungsa, 1999.
57. 박희진·차명수, “朝鮮後期와 日帝時代의 人口變動 - 全州李氏 長川君派와 咸陽朴氏 正郎公派 族譜의 分析,” 『경제사학』, 35, 2003, pp. 3-27.
(Translated in English) Park, Heejin, and Myung Soo Cha, “Demographic Trends in Late Dynastic and Colonial Korea: Evidence from Two Genealogies,” *Kyungje Sahak*, No. 35, 2003, pp. 3-27.
58. 배학섭, “조선후기 민중운동 연구의 몇 가지 문제: 임술민란을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19, 2008, pp. 207-241.
(Translated in English) Bae, Hangsurp, “Historical Studies of the People’s Movements that Occurred During the Chosŏn Dynasty’s Latter Half Period, and Several Issues,” *Yuksamunje Yongu*, No. 19, pp. 207-241.
59. _____, “조선후기 토지소유구조 및 매매관습에 대한 비교사적 검토,” 『韓國史研究』, 149, 2010, pp. 189-237.
(Translated in English) Bae, Hangsurp, “Comparative Analysis of the Landownership Structure and Land Purchase/Sale Customs during late Chosŏn,” *Hankuksa Yongu*, No. 149, 2010, pp. 189-237.
60. 손병규, 『조선왕조 재정시스템의 재발견: 17-19세기 지방재정사 연구』, 역사비평사, 2008.
(Translated in English) Sohn, Byunggyoo, *Rediscovery of Chosŏn Dynasty’s Financial System*, Seoul: Yuksa Bipyungsa, 2008.
61. 宋洙煥, 『朝鮮前期 王室財政 研究』, 집문당, 2000.
(Translated in English) Song, Soohwan, *A Study of Royal Finance in Early Chosŏn Dynasty*, Seoul: Jipmindang, 2000.
62. 송양섭, “조선후기 신분·직역 연구와 ‘직역체제’의 인식,” 『조선시대사학보』, 34, 2005, pp. 127-157.
(Translated in English) Song, Yangsurp, “Social Status and Occupational Systems During the Late Chosŏn Dynasty,” *Chosŏnsidae Sahakbo*, No. 34, 2005, pp. 127-157.
63. 宋俊浩, 『朝鮮社會史研究: 朝鮮社會의 構造와 性格 및 그 變遷에 관한 研究』, 일조각, 1987.
(Translated in English) Song, Joonho, *Social History of Chosŏn Korea: Structure, Character, and Change of Chosŏn Society*, Seoul: Iljokak, 1987.
64. 송찬섭, 『朝鮮後期 還穀制度改革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Translated in English) Song, Chansurp, *A Study of Reform for the Grain Storage System in Late Chosŏn Dynasty*, Seoul: Seoul University Press, 2002.
65. 스카와 히데노리(須川英德), “시전상인과 국가재정: 가와이(河合)문고 소장의 綿紬塵 문서를 중심으로,” 이현창 편, 『조선후기 재정과 시장 - 경제체제론의 접근』, 서울대학교출판문

화원, 2010, pp.343-378.

(Translated in English) Sukawa, Hidenori, "The Licensed Guild and State Finance," Lee, Hun-Chnang, ed. *State Finance and the Market in Late Chosŏn Korea*, Seoul: Seoul University Press, 2010, pp.343-378.

66. 申採湜, "宋 이후의 皇帝權," 동양사학회 편, 『東亞史上的 王權』, 한울, 1993, pp.66-101.

(Translated in English) Shin, Chaesik, "Power of Emperor after Song Dynasty," Domgyang Sahakhwe, ed., *Regal Power in History of East Asia*, Seoul: Hanwool, 1993, pp.66-101.

67. 역사와 현실 편집부, "토론: 조선 후기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II - 조선 후기 신분제 · 신분변동에 대한 재검토," 『역사와 현실』, 48, 2003, pp.81-103.

(Translated in English) Editorial Department of Yuksawa Hyunsil, ed., "Reexamination of Status System and Status Change in Late Chosŏn Dynasty," *Yuksawa Hyunsil*, No. 48, 2003, pp.81-103.

68. 역사학회 편, 『노비 · 농노 · 노예: 隸屬民의 比較史』, 일조각, 1998.

(Translated in English) Yuksahakhwe, ed., *A Comparative History of Subordinate People: Nobi, Serf, and Slave*, Seoul: Iljokak, 1998.

69. 廉定燮, "18세기 후반 正祖代 勸農策과 水利진흥책," 『韓國文化』, 29, 2002, pp.179-216.

(Translated in English) Yum, Jungsurp, "Policies of Promoting Agriculture and Water Supply in Late 18th Century," *Hankuk Munhwa*, No. 29, pp.179-216.

70. 오수창, "조선시대 장리(贓吏) 처벌의 추이," 『역사학보』, 157, 1998, pp.43-72.

(Translated in English) Oh, Soochang, "Patterns in the Punishment of Corrupt Officials in the Chosŏn Period," *Yuksa hakbo*, No. 157, pp.43-72.

71. 와거너, 에드워드, 이훈상 · 손숙경 역, 『조선왕조 사회의 성취와 귀속』, 일조각, 2007.

(Translated in English) Wagner, Edward W., *Achievement and Ascription in Chosŏn Dynasty*, Seoul: Iljokak, 2007.

72. 우대형, "조선 후기 인구압력과 상품작물 및 농촌직물업의 발달," 『경제사학』, 34, 2003, pp.3-30.

(Translated in English) Woo, Daehyung, "Population Pressure, Cash Crops and Rural Industry in Late Chosŏn Dynasty," *Kyungje Sahak*, No. 34, 2003, pp.3-30.

73. 劉承源, 『朝鮮初期身分制研究』, 을유문화사, 1987.

(Translated in English) Yoo, Seungwon, *A Study of the Status System in Early Chosŏn Korea*, Seoul: Eulyu Munhwasa, 1987.

74. 陸軍士官學校 韓國軍事研究室, 『韓國軍制史 - 近世朝鮮前期篇』, 陸軍本部, 1968.

(Translated in English) Study Department for Korean Military Affair in Korean Military Academy, *Korean Military History, Early Chosŏn Period*, The Headquarter Of the Korean Army, 1968.

75. _____, 『韓國軍制史 - 近世朝鮮後期篇』, 陸軍本部, 1977.

(Translated in English) Study department for Korean Military Affair in Korean Military

Academy, *Korean Military History, Late Chosŏn Period*, The Headquarter Of the Korean Army, 1977.

76. 이기순, “조선후기 인구사의 비평과 전망,” 『史叢』, 63, 2006, pp.5-27.
(Translated in English) Lee, Kisoon, “Comments and Themes of Demographic Research Regarding Late Chosŏn,” *Sachong*, No. 63, 2006, pp. 5-27.
77. 李相憲, “義禁府考,” 『法史學研究』, 4, 1977, pp.1-49.
(Translated in English) Lee, Sangsik, “A Study of Eukeumbu,” *Byupjesa Yongu*, No. 4, 1977, pp.1-49.
78. 李成茂, 『朝鮮初期 兩班研究』, 일조각, 1990.
(Translated in English) Lee, Sungmoo, *A Study of Yangban in Early Chosŏn Dynasty*, Seoul: Iljokak, 1990.
79. _____, “朝鮮時代の 王權,” 조선시대사학회 편, 『동양 삼국의 왕권과 관료제』, 국학자료원, 1999, pp. 51-85.
(Translated in English) Lee, Sungmoo, Regal Power in Chosŏn Period, Chosŏnsidae Sahakhwe, ed, *Regal Power and Bureaucracy of Three Nations in East Asia*, Seoul: Kukhak Jaryowon, 1999, pp.51-85.
80. _____, 『韓國의 科擧制度』, 集文堂, 2000.
(Translated in English) Lee, Sungmoo, *State Examination System in Traditional Korea*, Seoul: Jipmundang, 2000.
81. 李成妊, “16세기 朝鮮 兩班官僚의 仕宦과 그에 따른 收入 - 柳希春의 『眉巖日記』를 중심으로,” 『歷史學報』, 145, 1995, pp.91-146.
(Translated in English) Lee, Sungim, “A Study of Yangban Class officials’ Income in the 16th Century Korea - Viewed from Miamilkee,” You Hue-chun’s Diary, *Yuksahakbo*, No. 145, 1995, pp.91-146.
82. _____, “조선 중기 양반관료의 ‘稱念’에 대하여,” 『朝鮮時代史學報』, 29, 2004, pp.47-74.
(Translated in English) Lee, Sungim, “Favor of the Noble and Bureaucratic Class in Mid-Chosŏn Dynasty,” *Chosŏnsidae Sahakbo*, No. 29, 2004, pp.47-74.
83. _____, “16세기 양반사회의 ‘贈物經濟,’” 『韓國史研究』, 130, 2005, pp.53-82.
(Translated in English) Lee, Sungim, “Gift Economy in Yangban’s Society in the 16th Century,” *Hankuksa Yongu*, No. 130, 2005, pp.53-82.
84. 이영훈, “韓國史에 있어서 近代로의 移行과 特質,” 『경제사학』, 21, 1996, pp.75-102.
(Translated in English) Rhee, Younghoon, “Transition to the Modern Times and its Characteristics in Korean History,” *Kyungje Sahak*, 1996, pp.75-102.
85. _____, 『韓國 市場經濟와 民主主義의 歷史의 特質』, 한국개발연구원, 2000.
(Translated in English) Rhee, Younghoon, *Market Economy and Democracy in Korea*, Seoul: KDI, 2000.
86. _____, “전통사회의 경제와 증권의 유통,” 『한국의 유가증권 100년사』, 해남, 2005.
(Translated in English) Rhee, Younghoon, “Economy and Circulation of securities in Traditional Korea,” *100 Years of Securities in Korea*, Seoul: Haenam, 2005.

87. _____, “19세기 서울시장의 역사적 특질,” 『경제사학』, 48, 2010, pp. 3-39.
 (Translated in English) Rhee, Younghoon, “Historical Characteristics of Seoul Markets in the 19th Century,” *Kyungje Sahak*, No. 48, 2010, pp. 3-39.
88. 이영훈 편, 『수량경제사로 다시 본 조선후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Translated in English) Rhee, Younghoon, ed., *Late Chosŏn Korea in Perspective of Econometric History*, Seoul: Seoul University Press, 2004.
89. 이영훈 · 박이택, “18세기 조선왕조의 경제체제: 광역적 통합체제의 특질을 중심으로,” 나가무라 사토루(中村 哲) · 박섭 편저, 『근대 동아시아 경제의 역사적 구조』, 일조각, 2007.
 (Translated in English) Rhee, Younghoon and Yitae Park, “Economic System of Chosŏn Dynasty in the 18th Century,” in Nakamura, S. and Park, S. eds., *Historical Structure of Modern East Asian Economy*, Seoul: Iljokak, 2007.
90. 이우연, 『『부역실총』에 나타난 조선후기 지방재정의 규모와 특질』, 이현창 편, 『조선후기 재정과 시장 - 경제체제론의 접근』,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a, pp. 135-174.
 (Translated in English) Lee, Wooyoun, “Size and Characteristics of Local Taxes in the Late Chosŏn Dynasty,” in Lee, Hun-Chang, ed., *State Finance and the Market in Late Chosŏn Korea*, Seoul: Seoul University Press, 2010a, pp. 135-174.
91. _____, 『한국의 산림 소유제도와 정책의 역사, 1600-1987』, 일조각, 2010b.
 (Translated in English) Lee, Wooyoun, *Property Rights and Policies on Forest in Korea, 1600-1987*, Seoul: Iljokak, 2010b
92. 이정철, 『대동법: 조선 최고의 개혁』, 역사비평사, 2010.
 (Translated in English) Lee, Jungchul, *Daedongbup: The Best Reform in Chosŏn Dynasty*, Seoul: Yuksa Bipyungsa, 2010.
93. 이태진 외, 『서울상업사』, 태학사, 2000.
 (Translated in English) Lee, Taejin et al., *Seoul Commercial History*, Seoul: Taehaksa, 2000.
94. 李泰鎭, 『朝鮮後期の 政治와 軍營制 變遷』, 韓國研究院, 1985.
 (Translated in English) Lee, Taejin, *Politics and Military Camp System in Late Chosŏn Dynasty*, Seoul: Hankukyonguwon, 1985.
95. _____, 『韓國社會史研究』, 지식산업사, 1986.
 (Translated in English) Lee, Taejin, *A Study of Korean Social History*, Seoul: Jisiksanupsa, 1986.
96. _____, 『朝鮮儒教社會史論』, 지식산업사, 1989.
 (Translated in English) Lee, Taejin, *An Essay of Confucian Social History in Chosŏn Korea*, Seoul: jisiksanupsa, 1989.
97. _____, “朝鮮王朝의 儒教政治와 王權,” 동양사학회 편, 『東亞史上의 王權』, 한울, 1993, pp. 102-117.
 (Translated in English) Lee, Taejin, “Confucian Politics and Regal Power in Chosŏn Dynasty,” in Donyang Sahakhwe, ed., *Regal Power in History of East Asia*, Seoul: Hanwool, 1993, pp. 102-117.
98. _____, 『의술과 인구 그리고 농업기술 - 조선 유교국가의 경제발전 모델』, 태학사, 2002.

- (Translated in English) Lee, Taejin, *Medical Arts, Population, and Agricultural Technology in Chosŏn Dynasty*, Seoul: Taehaksa, 2002.
99. 이헌창 편, 『조선후기 재정과 시장 - 경제체제론의 접근』,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Translated in English) Lee, Hun-Chang, ed., *State Finance and the Market in Late Chosŏn Korea*, Seoul: Seoul University Press, 2010.
100. 李憲昶, “朝鮮時代 國家의 再分配機能과 國內商業政策”, 『省谷論叢』, 21, 1996, pp. 451-489.
(Translated in English) Lee, Hun-Chang, “Redistributive Function of the State and Commercial Policies in Chosŏn Period,” *Sunggok Nonchong*, No. 21, 1996, pp. 451-489.
101. _____, “朝鮮後期社會와 日本近世社會의 商品流通의 比較研究 - 前近代財政과 市場形成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財政政策論集』, 창간호, 1999.
(Translated in English) Lee, Hun-Chang, “A Comparative Study of Commercial Circulation between Late Chosŏn and Japanese Early Modern Society,” *Jaejung Jungchaek Nonjip*, No. 1, 1999.
102. _____, “제한된 합리적 선택으로서 조선시대의 유교 - 조선시대 유교를 위한 변명,” 『韓國實學研究』, 7, 2004a, pp. 153-208.
(Translated in English) Lee, Hun-Chang, “Confucianism in the Yi Dynasty as Bounded Rationality,” *Hankuk Silhak Yongu*, No. 7, 2004a, pp. 153-208.
103. _____, “한국 전근대 무역의 類型과 그 변동에 관한 연구,” 『경제사학』, 36, 2004b, pp. 83-122.
(Translated in English) Lee, Hun-Chang, “A Study on the Pattern and Change of the Pre-industrial Korean Trade,” *Kyungje Sahak*, No. 36, 2004b, pp. 83-122.
104. _____, “한국사에서의 수도집중,” 『한국사연구』, 134, 2006, pp. 1-34.
(Translated in English) Lee, Hun-Chang, “The Primacy of Capital Cities in Korean History,” *Hankuksayongu*, No. 134, 2006, pp. 1-34.
105. _____, “조선왕조의 경제통합체제와 그 변화에 관한 연구,” 이헌창 편, 『조선후기 재정과 시장 - 경제체제론의 접근』,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pp. 439-472.
(Translated in English) Lee, Hun-Chang, “The System of Economic Integration and Transformation in Chosŏn Dynasty,” in Lee, Hun-Chang, ed., *State Finance and the Market in Late Chosŏn Korea*, Seoul: Seoul University Press, 2010, pp. 439-472.
106. _____, 『韓國經濟通史』, (제4판), 해남, 2011.
(Translated in English) Lee, Hun-Chang, *Korean Economic History*, 4th ed., Seoul: Haenam, 2011.
107. 李蕙汀, “16세기 가내사환노비의 同類意識과 저항,” 『朝鮮時代史學報』, 54, 2010, pp. 129-161.
(Translated in English) Lee, Hyejung, “The Consciousness of Kind and Resistance of the Ganae Sahwan Nobi During the 16th Century,” *Chosŏnsidae Sahakbo*, No. 54, 2010, pp. 129-161.
108. 이훈상, “조선후기 지방 이서조직의 비교사적 고찰,” 『진단학보』, 90, 2000, pp. 85-122.

- (Translated in English) Lee, Hoonsang, "A Comparative Approach to the Local Functionaries' Lineage in Premodern Korea and China," *Jindanhakbo*, No. 90, 2000, pp. 85-122.
109. 李義權, 『朝鮮後期 地方統治行政 研究』, 集文堂, 1999.
(Translated in English) Lee, Heekwon, *A Study of Local Administration in Late Chosŏn Dynasty*, Seoul: Jipmundang, 1999.
110. 임민혁, "조선초기 解由制의 성립과 그 성격", 『朝鮮時代史學報』, 33, 2005, pp. 5-37.
(Translated in English) Im, Minhyuk, "The Institutionalizing of the Haeyu System and its Characters in the Early Chosŏn Period," *Chosŏnsidae Sahakbo*, No. 33, 2005, pp. 5-37.
111. _____, "조선후기 解由行政의 文書式과 그 실제", 『古文書研究』, 28, 2006, pp. 299-329.
(Translated in English) Im, Minhyuk, "The Document form and Actual Condition of the Haeyu Administration in the Latter Chosun Era," *Komunseo Yongu*, No. 28, 2006, pp. 299-329.
112. 임병준, "암행어사제도의 운영성과와 한계", 『법사학연구』, 24, 2001, pp. 39-61.
(Translated in English) Im, Byungjoon, "The Effectiveness and Limits of the Amhaeng-Uhsa System," *Bupsahak Yongu*, No. 24, 2001, pp. 39-61.
113. 張東杓, 『朝鮮後期 地方財政研究』, 국학자료원, 1999.
(Translated in English) Jang, Donpyo, *A Study of Local Governmental Finance in Late Chosŏn Period*, Seoul: Kukhak Jaryowon, 1999.
114. 全海宗, "中國과 韓國의 王朝交替에 대하여 - 그 交替의 要因에 관한 比較小論", 『東亞文化의 比較史의 研究』, 일조각, 1976, pp. 2-20 (『白山學報』, 8, 1970).
(Translated in English) Jun, Haejong, "On the Change of Dynasties in China and Korea," *Comparative Studies of East Asian Culture*, Seoul: Iljokak, 1976, pp. 2-20.
115. 鄭奭鍾, 『朝鮮後期社會變動研究』, 일조각, 1983.
(Translated in English) Jung, Seokjong, *Social Change in Late Chosŏn Society*, Seoul: Iljokak, 1983.
116. 정진영, "향촌사회에서 본 조선후기 신분과 신분변화", 『역사와 현실』, 48, 2003, pp. 53-80.
(Translated in English) Jung, Jinyoung, "The Social Rank and its Changes of Local Society in late Chosŏn dynasty," *Yuksawa Hyunsil*, No. 48, 2003, pp. 53-80.
117. 조선시대사학회 편, 『東洋 三國의 王權과 官僚制』, 국학자료원, 1999.
(Translated in English) Chosŏnsidae Sahakhwe, ed., *Regal Power and Bureaucracy of Three Nations in East Asia*, Seoul: Kukhak Jaryowon, 1999.
118. 조세열, "16세기 환자제 운영의 추이", 『역사연구』, 6, 역사학연구소, 1998, pp. 169-211.
(Translated in English) Cho, Seyul, "Change of the Grain Storage Management in the 16th Century," *Yuksa Yongu*, No. 6, Yuksahak Yonguso, 1998, pp. 169-211.
119. 조영준, "조선후기 왕실재정의 구조와 규모", 이헌창 편, 『조선후기 재정과 시장』,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0, pp. 105-134.
(Translated in English) Cho, Youngjun, "The Structure and Volume of Royal Finance in late Chosŏn Dynasty," in Lee, Hun-Chang, ed., *State Finance and the Market in Late Chosŏn Korea*, Seoul: Seoul University Press, 2010, pp. 105-134.

120. 조윤선, 『조선후기 소송 연구』, 국학자료원, 2002.
(Translated in English) Cho, Yoonsun, *A Study of Lawsuits in Late Chosŏn Dynasty*, Seoul: Kukhak Jaryowon, 2002.
121. _____, “朝鮮後期 綱常犯罪의 양상과 法的 대응책,” 『法史學研究』, 34, 2006, pp. 39-72.
(Translated in English) Cho, Yoonsun, “The Aspects and Legal Responses of Moral Principle Crime in the Latter Terms of Chosun Dynasty,” *Bupsahak Yongu*, No. 34, 2006, pp. 39-72.
122. 池承鍾, 『朝鮮前期 奴婢身分研究』, 일조각, 1995.
(Translated in English) Ji, Seungjong, *A study of the Nobi Status in Early Chosŏn*, Seoul: Iljokak, 1995.
123. 차명수, “의례에 나타난 조선 중, 후기의 비숙련 실질임금 추세, 1600-1909”, 『경제사학』, 46, 2009a, pp. 3-26.
(Translated in English) Cha, Myung Soo, “Trend in Real Wages of Unskilled Workers in Korea, 1600-1909: Evidence from Register of Public Works (uigwe),” *Kyungje Sahak*, No. 46, 2009a, pp. 3-26.
124. _____, “조선후기의 출산력, 사망력 및 인구증가: 네 족보에 나타난 1700-1899년간 생몰 기록을 이용한 연구,” 『한국인구학』, 32(1), 2009b, pp. 113-137.
(Translated in English) Cha, Myung Soo, “Fertility, Mortality, and Population Growth in 18th and 19th Century Korea: Evidence from Genealogies,” *Hankuk Inguhak*, Vol. 31, No. 1, 2009, pp. 113-137.
125. 車美姬, 『朝鮮時代 文科制度研究』, 國學資料院, 1999.
(Translated in English) Cha, Mihee, *The State Examination System (Munkwa) System in Chosŏn Dynasty*, Seoul: Kukhak Jaryowon, 1999.
126. 車長燮, 『朝鮮後期閥閥研究』, 일조각, 1997.
(Translated in English) Cha, Jangsup, *A Study of Power Clans in Chosŏn Dynasty*, Seoul: Iljokak, 1997.
127. 車河淳 외, 『韓國史時代區分論』, 소화, 1995.
(Translated in English) Cha, Hasoon et al., *Periodization of Korean History*, Seoul: Sohwa, 1995.
128. 최원규, “朝鮮後期 水利기구와 經營문제,” 『國史館論叢』, 39, 1992, pp. 211-263.
(Translated in English) Choi, Wonkyu, “Water Supply System and its Management Problems,” *Kuksakwan Nonchong*, No. 39, 1992, pp. 211-263.
129. 崔熙洙, “朝鮮初期의 勸力構造와 勸力相互間의 統制原理에 대한 考察,” 『法史學研究』, 28, 2003, pp. 129-156.
(Translated in English) Choi, Heesoo, “A Study on the Power Structure and the Control Principles between Powers in the Early Chosun Dynasty,” *Bupsahak Yongu*, No. 28, 2003, pp. 129-156.
130. 팔레, 제임스, “朝鮮王朝의 官僚의 君主制,” 조선시대사학회 편, 『東洋 三國의 王權과 官僚制』, 국학자료원, 1999, pp. 87-120.

- (Translated in English) Palais, James B., "Bureaucratic Monarchy of Chosŏn Dynasty," Chosŏnsidae Sahakhwe, ed, *Regal Power and Bureaucracy of Three Nations in East Asia*, Seoul: Kukhak Jaryowon, 1999, pp.87-120.
131. 韓國古代史研究會 편, 『古代와 中世의 韓國史의 時代區分』, 신서원, 1995.
(Translated in English) Hankuk Godaesa Yonguhwe ed., *Periodization of Antiquity and Middle Age in Korean History*, Seoul: Sinseowon, 1995.
132. 한국고문서학회 편, 『동아시아 근세사회의 비교: 신분·촌락·토지소유관계』, 혜안, 2006.
(Translated in English) Komunseo Hakhwe, ed., *Comparative Studies of the East Asian Early Modern Times: Status, Village, and Property Rights*, Seoul: Hyeon, 2006.
133. 韓相權, 『朝鮮前期 社會와 訴冤制度: 上言·擊錚 研究』, 일조각, 1996.
(Translated in English) Han, Sangkwon, *Petition System in Early Chosŏn Dynasty*, Seoul: Iljokak, 1996.
134. _____, "영조·정조의 새로운 상업관과 서울 상업정책," 이태진 외, 『서울상업사』, 태학사, 2000, pp.257-304.
(Translated in English) Han, Sangkwon, "New View of King Youngjo and King Jungjo on the Commerce and Commercial Policies," in Lee, Taejin et al, *Seoul Commercial History*, Seoul: Taehaksa, 2000, pp.257-304.
135. 韓永愚, 『朝鮮前期 社會經濟研究』, 乙酉出版社, 1983.
(Translated in English) Han, Youngwoo, *A Study of Social Economy in Early Chosŏn Period*, Seoul: Eulyoo Press, 1983.
136. 韓忠熙, "朝鮮初期 蔭敍의 實際와 役割 - 樞要職歷任者와 鉅族出身仕宦者의 歷官分析을 중심으로," 『韓國史研究』, 91, 1995, pp.59-97.
(Translated in English) Han, Chunghee, "The Practice and Role of the Umso in the Early Chosŏn Dynasty," *Hankuksa Yongu*, No. 91, 1995, pp.59-97.
137. _____, "朝鮮初期 官職構造研究," 『大邱史學』, 75, 2004, pp.37-64.
(Translated in English) Han, Chunghee, "A Study of the Office System in the Early Chosŏn Dynasty," *Daegu Sahak*, No. 75, 2004, pp.37-64.
138. 菅野修一, "朝鮮朝初期における義倉制の開始," 『朝鮮學報』, 153, 1994, pp.1-46.
(Translated in English) Kanno, Shuichi, "Beginning of Grain Storage System in Early Chosŏn Dynasty," *Chosen Gakuho*, No. 153, 1994, pp.1-46.
139. _____, "朝鮮世宗代の賑恤政策に關する一考察," 『朝鮮學報』, 178, 2001, pp.39-96.
(Translated in English) Kanno, Shuichi, "Relief Policies of King Sejong Period in Chosŏn Dynasty," *Chosen Gakuho*, No. 178, 2001, pp.39-96.
140. 宮嶋博史, 『兩班: 李朝社會の特權階層』, 中央公論社, 1995.
(Translated in English) Miyajima, Hiroshi, *Yangban: the Privileged Status in Chosŏn Society*, Tokyo: Chuokoronsha, 1995.
141. 四方博, "李朝人口に關する身分階級的觀察," 『朝鮮經濟の研究』, 3 (京城帝國大學法學會論集 제10책), 1938(『朝鮮社會經濟史研究』中, 國書刊行會, 1976).
(Translated in English) Shikata, Hiroshi, "Distribution of Population of Late Chosŏn

- Korea by Social Class,” *Chosen Keizai no Kenkyu*, 3, Seoul: Keijo Teikokudaigaku Hougakkai, 1938.
142. 植松忠博, 『士農工商: 儒教思想と官僚支配』, 同文館, 1997.
(Translated in English) Uemastu, Tadahiro, *Shi-Nou-Kou-Shou: Confucianism and Bureaucratic Rule*, Tokyo: Doumonkan, 1997.
143. Acemoglu, Daron, James A. Robinson, *Economic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144. Alesina, Alberto, Enrico Spolaore, *The Size of Nations*, MIT Press, 2003.
145. Barzel, Yoram, *A Theory of the State: Economic Rights, Legal Rights, and the Scope of the Stat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146. Blanton, Richard, Lane Fargher, *Collective Action in the Formation of Pre-Modern States*, Springer, 2008.
147. Buchanan, James M., “Rent Seeking and Profit Seeking,” in James M. Buchanan, Robert Tollison and Goden Tullock, eds., *Toward a Theory of the Rent-seeking society*, Texas A&M University Press, 1980.
148. Cha, Myung Soo, “Productivity Trend in Korea from the Seventeenth to Nineteenth Century: A Comment on Jun, Lewis and Kang,” *Journal of Economic History*, 69(4), pp. 1138-1143, 2009.
149. Cumings, Bruce, *Korea's Place in the Sun: A Modern History*, W.W. Norton & Company, 1997.
150. Duncan, John B., *The Origins of Chosŏn Dynasty*,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0.
151. Eisenstadt, S. N., *The Political Systems of Empires*, The Free Press of Glencoe, 1963.
152. Hardin, Garrett, “The Tragedy of the Commons,” *Science*, 162, 1968, pp. 1243-1248.
153. Henderson, G., *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Translated in Korean) 박행웅·이종삼 역, 『소용돌이의 한국정치』, 한울, 2000.
154. Jun, Seong Ho, James B. Lewis and Kang Han-Rog, “Korean Expansion and Decline from the Seventeenth to the Nineteenth Century: A View Suggested by Adam Smith,” *Journal of Economic History*, 68(1), 2008, pp. 244-282.
155. _____, “Stability or Decline? Demand or Supply?,” *Journal of Economic History*, 69(4), 2009, pp. 1144-1151.
156. Kim, Sun Joo, *Marginality and Subversion in Korea*,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7a.
157. _____, “Tax, the Local Elite, and the Rural Populace in the Chinju Uprising of 1862,” *Journal of Asian Studies*, 66(4), 2007b, pp. 993-1027.
158. Levi, Margaret, *Of Rule and Revenu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8.
159. Li, Lillian M., *Fighting Famine in North China: State, Market, and Environmental Decline, 1690s-1990s*,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7.
160. Maddison, Angus, *Contours of the World Economy, 1-2030 A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161. Mokyr, Joel, *The Gift of Athena*,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2.
162. Moore, Barrington, *Social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 Lord and Peasant in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 Boston: Beacon Press, 1966.
163. North, Douglass C., *Structure and Change in Economic History*, W. W. Norton, 1981.
164. _____,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165. _____, *Understanding the Process of Economic Chan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5.
166. North, C. Douglass, John Joseph Wallis, and Barry R. Weingast (NWW), *Violence and Social Ord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167. Olson, Mancur,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65.
168. _____, *The Rise and Decline of Nations: Economic Growth, Stagnation, and Social Rigidity*, Yale University Press, 1982.
169. Palais, James B., *Politics and Policy in Traditional Kore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5.
170. _____, *Confucian Statecraft and Korean Institutions*,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96.
171. Polanyi, Karl, *The Great Transformation*, Rinehart and Company, 1944.
172. _____, *The Livelihood of Man*, Academic Press, 1977.
173. Pomeranz, Kenneth, *The Great Divergence: China, Europe, and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 Econom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0.
174. Popkin, S., *The Rational Peasant*,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9.
175. Scott, J., *The Moral Economy of the Peasant*, Yale University Press, 1976.
176. Sen, Amartya, *Poverty and Famine*, Oxford: Clarendon Press, 1981.
177. Tong, James W., *Disorder under Heaven: Collective Violence in the Ming Dynasty*,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1.
178. Tullock, Gordon, *Public Goods, Redistribution and Rent Seeking*, Edward Elgar, 2005.
179. Wong, R. Bin, *China Transformed: Historical Change and the Limits of European Experience*,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Economic Origins of the Longevity of Chosŏn Dynasty (1392-1910) in Korea

Jae Ho Kim*

Abstract

The paper is an attempt to understand the conditions for the longevity of Chosŏn dynasty (1392-1910) in Korea on the economic base. It focuses on incentives to make elites and masses cooperate with the dynasty, while previous studies explained it mainly with the balances of political powers. The dynasty was able to get loyalty from elites who constituted dominant coalition by guaranteeing them various rents. The main sources of the rents were in the governmental finances and commercial sectors depending on the finances, with reflecting the redistributive economic system. ‘Gift economy’ between the elites based upon the local governmental finances assumed a role to secure and consolidate the dominant coalition. Keeping the agrarian identity of the elites also contributed to the longevity by excluding merchants and craftsmen from the coalition. Though the dynasty made severe laws against all kind of rebels, the ‘quasi-voluntary compliance’ of the masses by public goods was more important than the laws. The grain storage system prevented economic crises from transforming toward political ones. It was critical to maintain the balance between the rents to elites and the public goods to masses.

Key Words: Chosŏn dynasty, natural state, dominant coalition, longevity, redistribution, rent, public goods, grain storage, quasi-voluntary compliance, collective action

Received: April 19, 2011. Revised: July 29, 2011. Accepted: Oct. 17, 2011.

* Associate Professor, The Faculty of Economic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300 Yongbong-dong, Buk-gu, Gwangju 500-757, Korea, Phone: +82-62-530-1555, e-mail: jhokim@jnu.ac.kr